

일제강점기 충북지역 농촌사회의 변동과 농민운동 - 1920 ~ 30년대 초를 중심으로 -

장승순*

-
1. 머리말
 2. 농촌사회의 변동과 농민운동의 조건
 - 1) 사회·경제적 배경
 - 2) 일제의 농촌통제 정책
 - 3) 지주-소작제의 확대
 - 4) 농민경제의 몰락과 농민층의 현실
 3. 농민운동의 전개
 - 1) 농민운동의 개관
 - 2) 소작조합의 농민운동
 - 3) 농민조합의 농민운동
 4. 농민운동의 성격
 5. 맺음말
-

1. 머리말

일제하의 농민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봉건적 억압에 맞서 투쟁했으며, 민족 해방 투쟁의 주력군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 충북대학교 사학과

러한 점은 충북지역의 농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충북지역의 농민들은 3·1운동 이후부터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농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은 민족 해방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일제하 농민운동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인 투쟁 사례, 즉 지역별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었다.¹⁾ 竝木眞人은 식민지 시대의 지방 농민운동에 관한 최초의 사례연구를 처음 시작하여 이후 연구의 단초를 열었다. 이 연구에서 그는 각 지역의 민중들이 일상생활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전개한 운동을 구체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민족 해방 투쟁의 대중적 기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구명하고자 했다. 이후 飛田雄一은 정평, 영흥, 명천 지역의 적색농민조합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모두 빈농 위주의 농민동맹이 중심이 되어 농민조합을 만들었

1) 竝木眞人, 「日帝下 朝鮮にあける地方民衆運動の 展開-咸鏡南道 흥원군의 事例を中心に」, 『조선사연구회논문집』20, 1983; 飛田雄一, 「정평농민조합전개:1930년대 적색농민조합 일 사례」, 『조선사총』 제5.6합병호, 1982; 비전웅일, 「영흥농민조합의전개:1930년대적색농민조합의일사례」, 『조선 1930년대연구』, (동경)삼일서방, 1982; 비전웅일, 「명천 농민조합의 전개-1930년대 적색농민조합의 일사례」, 『조선민족운동사연구』5, 1988; 신주백, 「1930년대 함경도 지방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연구-조직적 측면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이준식, 「일제하 단천 지방의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농민운동의 조직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강정숙, 「일제하 안동지방 농민운동에 관한 연구」, 장시원 외, 『한국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1988; 이종범, 「1920:30년대 진도지방의 농촌 사정과 농민조합운동」, 『역사학보』109, 1986; 지수걸, 「일제하 함안지역의 민중운동」, 『민족지성』2, 1990; 한도현, 「반제 반봉건 투쟁의 전개와 농민조합:명천군 농민조합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 연구회편, 『일제하 사회운동』, 문학과 지성사, 1987; 장세욱, 「일제하 부여지역 동족마을의 농민운동 연구」, 『호서사학』제33집, 1998; 오미일, 「1920년대 진주지역 농민운동」, 『진주농민운동의 역사적 조명』, 역사비평사, 2003; 정연심, 「1920년대 진주노동공제회의 조직과 농민운동의 발전」, 『부대사학』제21집, 1997; 이윤갑, 「1920년대 경북지역 농촌사회의 변동과 농민운동」, 『한국사연구』113, 2001; 박이준, 「1930년대 영암지방 적색농민조합운동의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18, 2001; 조성운, 「일제하 영동지방의농민조합운동의 구조와 성격-참여자의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18, 2001; 조성운,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영동지방을 중심으로」, 혜안, 2002; 홍영기, 『1920년대 전북지역 농민운동』, 한국학술정보, 2006.

고, 조합으로 개편될 당시에는 극좌적 운동방침을 채택하였으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군내의 상당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준식²⁾은 단천 농민조합의 연구를 통하여 농민 연합회가 분산되어 농민사와 농민동맹으로 분립되었고, 이것이 농민조합으로 개편되었다고 하였다. 그 밖에 영흥, 정평, 흥원, 김해 지역의 농민운동을 지방 차원에서 노동, 청년, 여성 등의 각 부분 운동과의 연결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바탕위에 기존의 연구가 함경도 지방에 편중되어 연구된 것에 대하여 사례의 폭을 남부지역으로까지 확대하여 강정숙은 주로 문헌사료에만 의존하던 연구와는 달리 관련 인물들과 인터뷰를 통한 자료로써 안동 농민조합을 분석하였고, 지수걸이 함안을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남부 논농사 지역의 운동 양상을 살펴보고, 그밖에 완도, 해남, 정평, 명천 지역의 혁명적 농조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종범³⁾이 진도 농민조합의 연구, 강호출⁴⁾의 충북 영동지역의 농민운동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지역적으로도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활발한 함경도 지역의 발농사지역과 남부 지방 중에서도 식민지 지주제의 모순이 첨예하고 나뉘므로 활발한 활동이 있었던 지역에 대한 연구였다.

이후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농민운동에 관한 논문을 계속 배출하였고,⁵⁾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농민운동 연구의 방법론을 과학적으로

2) 이준식, 「일제하 단천 지방의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3) 이종범, 「1920~30년대 진도지방의 농촌사정과 농민조합운동」, 『역사학보』 109, 1986.

4) 강호출, 「식민지시대 충북 영동지역의 농민운동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5) 운동 권역 설정의 객관적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더 숙고되어야겠으나 지역운동의 특징, 그리고 운동의 전체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운동권역 설정의 지표로써 지리적 환경, 지주 소작관계의 특징, 자본주의 발달정도, 봉건적 인습의 유무, 종교의 지역적 분포, 농민조합 조직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농민운동의 지역적 편차문제가 좀 더 밝혀져야 할 것이다(지수걸, 「식민지시대 농민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근대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1988, 434쪽); 장세욱, 「일제하 부여지역 동족마을의 농민운동 연구」, 『호서사학』 제33집, 1998; 오미일, 「1920년대 진주지역 농민운동」, 『진주농민운동의 역사적 조명』, 역사비평

로 재정립할 것⁶⁾을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농민운동의 연구단위도 道까지 확대되었다.⁷⁾

그러나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 중부지방 농민운동의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⁸⁾ 특히 충북지역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⁹⁾ 그 이유는 충북지역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일제 전시기를 통해서 운동다운 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적도 없고, 그런 기록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함안지역 농민운동가였던, 김진국은 「1930년 농민운동 概況¹⁰⁾」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는데, “中鮮(경기, 충청지방)지역의 농민운동은 지리상으로 산악이 많고 耕地 面積이 少하여 자본주의 발달 정도가 심히 低迷한 등으로 농민 생활에 尙소 封建的 因習이 滿載하고 전체가 모두 保守的이며 微溫的이었다.”라고 할 정도였다. 특히 충북지역은 그 정도가 가장 심

사, 2003; 정연심, 「1920년대 진주노동공제회의 조직과 농민운동의 발전」, 『부대사학』제21집, 1997; 이윤갑, 「1920년대 경북지역 농촌사회의 변동과 농민운동」, 『한국사연구』113, 2001; 박이준, 「1930년대 영암지방 적색농민조합운동의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18, 2001; 조성운, 「일제하 영동지방의 농민조합운동의 구조와 성격-참여자의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18, 2001.

- 6) 이윤갑,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사 연구에 대한 방법론 비판」, 『啓明史學』9, 1998; 김동노, 「일제시대 식민지 근대화와 농민운동의 전환」, 『한국사회학』41-1, 2007.
- 7) 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I,II), 여강, 1993; 이윤갑, 「1920년대 경북지역 농촌사회의 변동과 농민운동」, 『한국사연구』113호, 2001; 조성운,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영동지방을 중심으로」, 혜안, 2002; 홍영기, 『1920년대 전북지역 농민운동』, 한국학술정보, 2006.
- 8) 中鮮地域의 연구는 조성운,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영동지방을 중심으로』, 혜안, 2002가 유일하다.
- 9) 충북지역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는 두 개의 논문이 있는데, 지수걸은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3에서 농민조합이 설립된 지역의 사례만을 합법적 농민조합과 혁명적 농민조합의 결성에 관한 것으로 농민운동에 관한 것을 연구하였고, 강호출은 「식민지시대 충북 영동지역의 농민운동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에서 영동지역의 농민조합을 다루고 있다.
- 10) 김진국은 『조선일보』 1932년 1월 1일에서 28일까지 13회에 걸쳐 조선의 농민운동을 개관했다.

했음은 물론이다. 실제로 충북지역은 내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외부 문명이 차단된 채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곳으로, 산업도 타 지역보다 발전이 뒤떨어졌고, 보수적 성격이 강한 곳이다.

일제하 농민운동의 주된 투쟁대상은 일제의 독점자본과 식민지 지주들이었다.¹¹⁾ 실제로 농민문제는 식민지 농업 수탈정책이 반봉건적인 지주제를 매개로 강제된 데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농민운동은 농민의 8할의 생존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지주제의 개혁 즉, 토지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자체를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이러한 지주제를 극복하기 위해 1920년대 이후 치열하게 소작관계 개선투쟁, 농업정책 반대 투쟁, 협동조합운동 등으로 나타난 소작인조합 및 농민조합의 농민운동을 통하여 일제의 수탈과 억압에 대응하였다.

이글에서는 충북지역 농민들에 의해 1920년대에서 30년대 초반에 나타난 농업정책 반대투쟁의 제 양상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일제의 식민 통치정책이 충북지역에서 구현되는 과정과, 그 결과 농촌사회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봄, 제3장에서는 충북지역의 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을 1920년대 전반기 소작인조합형태의 농민단체를,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은 농민운동조합 형태의 농민단체들을 청년운동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분석대상의 사례 연구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충북지역의 농민운동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점은 무엇이었는지를 구명해 보고자 하였다.

11)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3, 14쪽.

2. 농촌사회의 변동과 농민운동의 조건

1) 사회·경제적 배경

충북지역은 四境界가 산악으로 둘러싸이고 해안선이 없으며, 소백산계의 주맥으로 도솔봉, 조령, 속리산 등의 여러 봉우리가 서로 솟아 동부로는 경상도와 경계를 이루고, 다시 북쪽으로 분기하여 대화산, 송학산, 백운산을 경계로 하여 강원도와 접하고, 남쪽에는 삼도봉, 황학산 등을 따라 경상북도 및 전라북도의 경계로 나누어지고 그 외 많은 지맥은 중흥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많은 하천과 평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산간에서 발원하고 모여져서 한강 및 금강으로 유입된다.

한강은 강원도에서 흘러들어와 단양, 제천, 충주를 지나 경기도로 흘러가고, 금강은 전라북도 및 경상북도에서 흘러들어 충청남도로 흘러들어온다. 충청북도는 대체로 산맥으로 둘러있고 토지는 높고 건조하며 모든 하류 안에는 작은 평야가 있고 특히 청주 및 충주 부근에는 비교적 큰 평야가 발달되어 있을 정도다.

忠淸北道는 1895년 道를 없애고 全道를 23府로 각각 나누어 관찰사를 두어 다스리게 할 때 충주부에서 관할하다가 1896년 또 다시 府를 없애고 13道를 설치할 때 비로소 충청북도라 칭하고 충주를 도청소재지로 정했다.¹²⁾ 1908년 도청소재지를 청주로 옮겨 18군 199면을 관할케 했고, 1914년에는 郡, 面의 廢置分合을 단행하여 10郡 110面으로 制度를 두었다.¹³⁾

12) 구한말 지방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윤정애, 「한말(1894~1905) 지방제도 개혁의 연구」, 연세대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이상찬, 「1906~1910년 지방 행정제도의 변화와 그 성격」, 서울대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5; 이상찬, 「한말 지방자치 실시논의와 그 성격」, 『역사비평』계간13호, 1991; 염인호, 「일제하 지방통치에 관한 연구-조선면제의 형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연세대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등을 참조할 것.

13) 1914년, 法令 第一號, 『面制』에 의거하여 ①면은 법령에 의하여 면에 소속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면의 사무는 면장이 담임한다. ③충

〈표-1〉 충북지역의 지방 행정구역

군명	읍면수	동리수	면적	읍 면 명
청주	17	335	63.13	청주,사주,낭성,미원,가덕,남일,남이,문의,현도,미용,강서,강내,강외,옥산,오창,북이,북일
보은	10	178	38.84	보은,속리,마노,탄부,삼승,수환,회남,회북,내북,산외
옥천	9	125	35.08	옥천,동이,안남,안내,청성,청산,이원,군서,군북
영동	11	131	55.23	영동,용산,황강,황금,매곡,상촌,양강,용화,학산,양산,심천
진천	7	79	25.57	진천,덕산,조평,문백,백곡,이월,만승
괴산	14	153	63.14	괴산,감물,장연,상모,연풍,칠성,문광,청천,청안,증평,도안,사리,소수,불항
음성	9	112	33.30	음성,소이,원남,맹동,대소,상섬,금왕,생극,감곡
충주	13	145	58.28	충주,사미,이유,주덕,신니,노은,양성,가금,금가,동량,산척,엄정,소대
제천	9	137	57.05	제천,금성,청풍,수산,덕산,한수,백운,봉양,송학
단양	7	109	51.32	단양,대강,가곡,영춘,어상천,매포,적성
합계	106	1,504	480.94	

자료: 忠淸北道, 『忠淸北道要覽』, 1928, 56쪽; 忠淸北道, 『道勢一斑』, 1932, 1쪽.
 자료: 면적의 단위는 方里이다.

충북지역의 총면적은 481方里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이나, 1방리당 평균 인구는 1,628명으로서 전국 평균 중간 정도에 속한다. 인구 총수는 조선 전국의 12위였다.¹⁴⁾

독부가 지정하는 면에 相談役을 설치한다(당시 23面을 지정하였다-당시 충북지역의 지정면은 청주가 유일하였다가 후에 충주지역도 지정면이 되었다.) 상당역은 면내에 주소가 있는 자로 도장관이 그를 임명한다는 원칙으로 행정구역의 廢置分合을 단행했다(朝鮮總督府, 『朝鮮の聚落』(前篇), 546쪽).

14) 1930년 충북 10군의 인구는 900,226명으로서 조선 전체 인구 21,058,305명에 대하여 4.27%에 해당하고 13도 중 12위에 있다. 그것을 1925년 4.34%에 비교하면 본도의 인구는 전조선인구에 대

면적은 청주와 괴산군이 가장 넓은 곳이었으며, 진천군이 가장 작았다. 그리고 청주, 충주, 괴산은 조선 이래 행정 중심 구역으로 읍면 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¹⁵⁾

1924년 당시 인구는 조선인이 774,889명, 일본인이 7,521명, 기타 외국인이 760명으로 총합 783,180명이었다.¹⁶⁾ 인구 1만인 이상의 도시는 1925년에는 청주가 1만이 넘었고, 1932년에는 청주에 이어 영동이 1만이 넘는 도시로 성장했다.¹⁷⁾

평야지역의 호별 상황은 충주 같은 대도시에 속하는 곳에서도 농촌 지역에 촌락들은 60호 이상 100호 미만이 3곳에 불과하고, 30호 이상 60호 미만이 12호, 10호에서 30호 미만이 21곳, 10호 미만이 4곳일 정도였다. 이러한 현상이 진천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하여 대부분은 30호 이상 60 미만이 16곳이고, 10호 이상 30호 이하가 31곳, 보은은 60호 이상 100호 미만이 2곳, 30호 이상 60호 미만이 10곳, 10호 이상 30호 미만이 39곳으로 대부분의 마을들이 소규모 散村을 이루고 있었다.¹⁸⁾

이러한 마을 중 同族村落은 150호 이상의 큰 동족촌락을 이루는 경

한 비율이 줄은 것으로 그 순위는 의연하게 12위에 이르는 것이다. 인구의 도내 각 군의 분포를 보면 그 수위를 점하는 것은 청주이고, 그 다음이 괴산, 충주로 10만 명이 넘고 그 다음은 영동, 제천, 옥천, 보은, 음성, 단양의 순이며, 진천이 최소이다(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道編-忠清北道, 1930, 1쪽).

15) 1929년 당시의 통계자료에는 동리수가 1,517곳으로 더 많았으나 나중에 통폐합되었다(『朝鮮의聚落』(前篇), 665쪽).

16) 善生永助, 『朝鮮の人口研究』, 朝鮮印刷株式會社, 1926, 67~68쪽; 1930년 당시 충북지역 총인구는 900,226명으로서 출생지로서 구분해 보면 도내생 760,476명, 타도생 132,848명, 내지생 5,590명, 기타생 1,317명으로서 그 총인구에 대한 비율은 도내생은 84.5%, 타도생은 14.8% 기타생은 8.2%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내생 중 자면내생은 539,348명, 타면생은 221,128명으로서 도내 타면생, 타도생, 도내생 및 타도생의 대부분을 점했다. 타도생은 경상북도가 62,363명, 충남 24,286명, 경기도 19,351명으로 타도생의 79.8%를 차지해 그 이외의 출생지는 극히 적다(『朝鮮國勢調査報告』道編-忠清北道, 7쪽).

17) 李如星, 金世鎔, 『數字朝鮮研究』제5집, 世光社, 1932, 75쪽.

18) 『朝鮮의聚落』(前篇), 275쪽.

우 충북지역은 8곳이 있었고, 100호 이상 150호 미만의 곳은 16곳, 60호 이상 100호 미만의 곳이 46곳, 30호 이상 60호 미만이 대부분으로 동쪽춘락도 그 단위가 60호에서 100호 정도의 충북지역 전역은 소규모 동네를 이루고 있었다.¹⁹⁾

조선인 이외에 일본인 및 외국인 총 호구 수는 일본인의 경우 1910년 현재 총 호수 825호에 인구가 2,265명 이었으나, 1920년에 이주정책으로 말미암아 1920년에는 1,789호구에서 5,883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후의 증가세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²⁰⁾

직업별 인구는 당시 전체인구 900,226명에 대하여 有業者는 373,103명으로 41.5%에 속하고, 失業者는 527,123명으로 58.6%였다. 男女별로는 남자는 유업자가 61.6%, 실업자가 38.4%이고. 여자는 유업자가 20.1%, 실업자가 79.9%로 남자가 여자보다 유업자가 많았다.²¹⁾ 직업별 호구수는

19) 『朝鮮의聚落』(前篇), 277쪽. 충북 총인구 중 80.4%는 무학자였고, 나머지도 한글을 어느 정도 쓸 줄 아는 사람은 13.9%, 한글과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0.6%에 불과했다(『朝鮮國勢調査報告』道編-忠淸北道, 10쪽).

20) 1930년 당시 충북 인구를 국적별로 구분해 보면 내지인은 8,030명, 조선인은 890,877명, 중국인 1,295명 기타 22명으로 일본인은 8.9%이고, 중국인은 1.4%에 불과 했다(『朝鮮國勢調査報告』道編-忠淸北道, 9쪽). 1913년 말의 통계에 의하면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출자지는 경기도와 경남, 황해도에 집중되었으며, 매수지는 전라북도 와 황해도에 집중되었다. 충북지역에는 동척의 출자지가 없었으며, 다만 밭 731정보, 논 525정보, 기타 49정보 등 총 1,305정보의 토지를 충북에서 매수하였다. 이는 전체 매수지 면적의 2, 3%에 불과하다(朝鮮總督府調査資料, 『朝鮮に於ける内地人』제2집, 1923, 48쪽). 이처럼 동척 등 일본인의 토지 침탈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지만,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비교적 산간지대가 많은 지역으로의 침탈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21) 『朝鮮國勢調査報告』道編-忠淸北道, 12쪽.

<표-2> 직업별 호구수 현황 (1927년 12월)

종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농업, 목축업	135,800	228	28	136,056
어업, 제조업	13	3		16
공업	1,862	120	7	1,989
상업, 교통업	7,190	654	276	8,120
공무, 자유업	2,957	973	11	3,941
기타	4,237	68	3	4,308
무직, 미신고업	1,541	5	0	1,546
합계	153,600	2,051	325	155,976

자료: 『忠淸北道要覽』, 1928, 6쪽.

일본인의 경우 상업, 교통업과 공무, 자유업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중국인)의 경우도 상업과 교통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인은 공업, 상업, 교통업, 공무, 자유업 등에 속한 12%를 제외하면 실제로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는 호수가 87.2%에 달하는 전형적인 농촌사회였다.

2) 일제의 농촌통제 정책

일제는 1910년대 정책적으로 추진한 ‘土地調査事業’을 기반으로 1920년대에는 이른바 ‘産米増殖計劃²²⁾’을 시행하면서 그 실천자로서 식민지주제를 완성하고자 지주제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²³⁾

22) 제1차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에 시행되어 1925년까지 진행되었으나 실적이 미비하여 1926년 계획이 갱신되었다. 1926년부터 시행된 제2차 산미증식계획은 1929년 경제공황으로 일본의 쌀값이 하락하여 일본에서는 ‘조선미배척운동’이 전개되고 1933년 3월 미곡통제법이 공포됨으로써 중단되었다.

23)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변천과정은 景仁文化社, 『日帝 植民地支配의 構造와 性格』, 2005를 참조할 것.

일제는 이러한 식민지 농정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지주계급이 농민과 농업전반을 통제하는 농업지배기구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물리적 억압기구를 동원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이른바 ‘不逞人’을 즉각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물리적 억압기구로서 총독부 관료 기구로 道, 郡, 面, 警察機構 등과 더불어 農會,²⁴⁾ 金融組合 등의 각종 公共團體(組合)들을 조직하였다.²⁵⁾ 아래 <표-3>은 충북지역 통치를 위해 만들어진 관공서들이다.

<표-3> 충북지역 관공서(1932년)

관공서	개수	관공서	개수
도청	1	학교조합	14
군청	10	수리조합	13
읍면사무소	106	전매국출장소	3
경찰서	10	지방법원지청	2
동 주재소	95	동 출장소	8
동 과출소	4	형무지소	1
농사시험장	1	우체국	2
잠업취체소	1	우편소	29

자료: 『道勢一斑』, 1932, 20쪽; 『忠淸北道要覽』, 1928, 6쪽.

일제는 이러한 기구를 이용하여 통치 방침으로 道를 운영하면서도 “道の 사무는 도지사가 담임하고, 종래의 자문기관인 도평의회를 도회로서 결의기관으로 고치게 하여 도회는 의장(도지사)으로서 그를 맡게 했다. 도회의원은 명예직으로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본도의 각회, 회의원 정원은 21명으로서 그의 1/3은 도민 중 학식과 명망이 있는 자

24) 여기서는 일본에서 실시하던 제국농회를 모방해서 지주 주도에 의한 농촌 재편성을 목표의 농회를 말한다(堀和生, 『日本 帝國主義의 朝鮮에서 의 農業政策』, 『日帝下 韓國社會構成體論』, 청아출판사, 1986, 214쪽).

25) 이종범, 「1920-30년대 진도지방의 농촌사정과 농민조합운동」, 『역사학보』 제109집, 1986, 70쪽.

로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선택하여 도지사가 그를 임명한다.”²⁶⁾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조선의 학식과 명망이 있는 자”를 일제지배의 조력자로서 만들려했다. 郡, 面의 운영도 마찬가지였다.

일제는 이를 위해 경찰조직도 잘 이용했다. 이 단적인 예로 1931년 경찰부장회의에서 충북 경찰부장의 「諮問答申書」에서 “충북지역의 경찰은 외근순사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사상의 파악에 힘쓰며, 시대추세에 반하는 것을 발견할 때는 합리적으로 誘導鞭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지도방법으로

첫째, 적당한 지도 감독자를 우선 물색 양성하여, 둘째, 그들은 날마다 직접 지역민들을 만나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셋째, 법률이 허용하는 한에서 직무를 집행하고, 신문지나 각종 교양서적 등을 선택하여 읽는 습관을 양성하고, 넷째, 조선어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섯째, 지시사항은 투철하게 소화하여 실천하고, 보편적 주의력을 배양하여 외근순사들의 기본적 소질을 확립한 후 합리적 지도방법으로 상부의 지도상황을 철저히 소화하여 상급관에 응하여 이를 실효를 보도록 하고 있다.²⁷⁾

라고 하며 조선인 중에서 지도 감독자(끄나풀-필자주)를 양성하여 그들을 통해 날마다 충북지역민을 만나고 一擧手 一投足を 감시하였다. 그리고 활동을 상급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사상방면으로는 불온분자들의 책동의 야기를 볼 수 없고 지극히 평온한 상태다. 그럼에도 근래에 교통기관의 발달에 동반하여 자극을 받아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의적 불온분자들의 동정, 불온사상의 전파 방지에 항상 주의를 기울리 하

26) 忠淸北道 編纂, 『忠淸北道要覽』, 행정학회인쇄소, 1934, 29쪽.

27) 朝鮮總督府, 『道警察部長會議諮問事項答申書』, 1931, 16~20쪽.

지 않고 조사함에 있다.”

라고 하며, 경찰은 이른바 ‘주의적 분자들’의 엄중한 사찰로 그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²⁸⁾ 이처럼 충북지역의 식민지배 기관과 경찰은 농촌사회에 그들이 규정하는 신사상이나 불온세력이 침투를 근본적으로 막았던 것이다.

일제는 3·1운동 이후 한편으로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친일파를 육성하여 민족내부의 대립을 조장하고, 민족 항일역량을 분산, 제압하려 하였다.²⁹⁾ 이러한 친일 단체의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정책에 잘 따르는 민간유지에게 압암리에 조선인 중진정 우리와 같은 이상과 정신을 지니고 목숨을 바쳐 이 일을 담당하고자 하는 중심적 친일인물을 물색하고 그 인물에게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교육자, 종교인 등 각각 그 계급과 사정에 맞게 각종 친일적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그리고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해주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일본인)와 같은 이상과 정신을 지니고 목숨을 바쳐 이 일을 담당하고자 하는 친일인물을 물색하고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친일적 단체를 조직하고자 했다. 즉 이들은 面協議會, 道評議會, 農會나 金融組合³⁰⁾ 등의 자치기구 내지 半官邊團體의 임원으로 임명하여 식민지 지배의 말단에 포섭시켰다. 이러한 지배정책은 농촌사회

28) 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査局思想部, 「昭和十年乃至十月社會運動情勢」, 『思想彙報』5호, 1935, 56쪽.

29) 조선인 자본가와 지주에 대한 포섭과 이용에 대해서는 강동진, 「친일세력의 육성, 보호, 이용」,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참조하기 바람.

30) 금융조합, 지주단체 등의 결성문제에 대해서는 文定昌, 『朝鮮農業團體史』, 日本評論社, 1944를 참조할 것.

내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오로지 양순하게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봉건적인 반상의식이 잔존하고 강화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충북지역은 儒林세력³¹⁾을 일제정책 수행의 동반자로 이용하였다. 과거 충북지역의 유림 중에서는 대동청년당이나 각종의 단체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관직이나 관직 경력을 갖는 일이 있었지만, 1920년대 이후 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지역유지로서 자기 지위를 찾고자 하였다.³²⁾ 그때 마침 충청북도의 군수회의를 즈음하여 충청북도 지사 박정양이 “관내 각 군에 명륜회를 조직하여 동양도덕의 원천이 되는 유교를 부흥하는 일면으로는 향당의 후진을 선도하여 공존공영의 實을 擧케 할 것”이라는 취지 훈시하자, 이에 따라 道를 중심으로 지역 유림들이 규합하여 明倫會를 설립하였다.

지역 유림들은 먼저 각 군내 유림 중 유력자로 하여금 준비 위원회를 개최, 충분히 협의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지방 청년유림 간에 신망이 있는 자를 役員으로 선정하여 명륜회를 조직하였다.³³⁾

31) 양반이 5,829호, 유생이 1,251호, 총 7,080호를 차지하면서 전체호수에 약 5.5%를 차지하고 있었다(『朝鮮の人口研究』, 146쪽).

32) 유림이나 지역유지들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구별이 필요하다. 충북지역에서 같은 사회적 지위로 유지계급에 속한 자라 하더라도 민영은, 방인혁, 손재하, 김영근 같은 부류는 지역사회 활동에 미친 영향이 확실히 다르다. 따라서 이들 같은 경우 민족 개량적인 1920년대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이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들은 1919년 3.1운동 때도 일본인들과 자제단을 구성해서 치안이나 방위를 하는데 힘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그들의 1920년대 사회 농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지역유지로 대표되는 유림들에 대해서는 위정척사사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의병전쟁이나 3.1운동 등에 참여한 이들이 이들 중 누구이고 왜 참여했는가 등은 꼭 밝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독립운동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행동으로 실천할 곳을 찾으며 이들이 활동하기 적합하지 않은 충북지역을 떠나 국내에서는 서울이나 다른 인근지방, 해외에 진출하게 되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33) 『매일신보』 1923년 9월 4일.

이에 따라 충북지역의 명륜회는 청주, 충주,³⁴⁾ 단양,³⁵⁾ 제천,³⁶⁾ 음성³⁷⁾ 등지에서 지회 성격으로 각각 조직되었다. 그리고 충북도청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1925년 2월 22일 8백 명의 유림으로 조직된 청주 명륜회는 文廟修理, 施政講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유림들은 1927년 3월 儒學講明, 後進教導, 社會弊風矯正, 公衆福利 增進을 목적으로 신규약을 마련하기도 하였다.³⁸⁾ 그러나 나름으로 유림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문묘시설 및 明倫會를 비롯한 유림단체를 조직하지만 그 조직의 운영과정에서는 운영경비의 필요 등으로 농민들에게 강제 세금을 징수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편, 1907년 5월 지방 「金融組合規則」의 발표와 함께 설립되기 시작한 지방 금융조합도 각종 농사개량지도, 부업장려, 위탁판매, 공동매입, 창고이용 등과 같은 부대사업을 통하여 식민지 농정을 지원한 준행정적인 기관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일제의 조선 강점 이전에는 군청의 권업시설을 능가할 정도로 지방 금융조합의 역할도 컸다. 일제는 면장 층, 지주계급, 유력 상인층의 주도로 중, 부농층을 기반으로 조직된 지방 금융조합에 대해서 금융조합과 각종 부대 지원을 통하여 식민지 농정을 수행하려 했던 것이다.³⁹⁾

금융조합은 그 조합이 창립된 이래 서민들의 금융기관으로서 조선

34) 『조선일보』 1927년 5월 13일. 충주 명륜 구락부는 명륜회의 다른 이름으로 보이며, 무산아동을 위한 학술강습소를 운영하였으며, 운영비용 모금을 위해 소인극을 공연한 바 있다.

35) 『조선일보』 1923년 10월 7일. 단양 명륜회는 지방의 교화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36) 『조선일보』 1923년 10월 10일. 제천 명륜회는 1923년 10월 5일 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조직되었다. 제천 명륜회는 청풍지부를 두기도 하였고 효자, 절부, 모범청년에게 표창식을 갖기도 하였다(『매일신보』 1927년 10월 28일).

37) 『조선일보』 1928년 10월 21일. 1928년에는 군내 각 마을에서 음성 명륜회장 朴勝鎬, 부회장 趙東煥, 宋達用 등이 「윤리와 도덕의 정신을 발휘하라」는 제목으로 순회강연을 개최한바 있다.

38) 『매일신보』 1927년 3월 31일; 『忠淸北道要覽』, 1934, 57쪽.

39) 정연태, 「1910년대 일제의 농업정책과 식민지 지주제」, 『한국사론』20, 1988, 433쪽.

금융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금융조합도 전국적으로 661곳이 있었는데 도시지역에는 61곳에 달하였고, 촌락지역에는 603곳의 조합이 있어 대부분 금융조합이 농촌에 있어 농민들의 중요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촌락에는 지소도 142곳이 있어 그 조합원 수가 692,434명으로 많은 농민이 조합에 가입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⁴⁰⁾

農會도 설치되어 식민농정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충북지역의 道農會는 조선농회의 보조로 도 단위의 품평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체 사업 혹은 군, 도 농회의 사업을 지원하면서 각종의 농사 개량과 관련한 강습, 강화회, 경기, 경작회, 전습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산미증식계획을 지원하였다. 계통농회는 산미증식계획으로 대표되는 대규모적인 권농정책의 실질적인 담당자가 되었다.

농사개량에 필요한 저리자금의 융자알선 및 회수사무를 군, 도농회가 담당했다. 즉 방대한 저리자금의 분배에 결정적인 발언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영농자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조합이 극도로 부진할 때는 유통과정의 공동판매, 공동구입, 창고업 등도 계통농회가 담당하였다.⁴¹⁾

系統農會도 ①지도기술, ②장려시설로 미맥품종 개량, 묘대 개량, 경전방법 개량, 미맥작 개량, 미두건조 제조개량, 비료 증제 증시, 병충해 구제예방, 농구개량, 부업의 장려 등, ③복리증진의 시설, 농사 저리자금의 알선 등, ④연구 및 조사, 비료 또는 시비방법 연구, ⑤농업에 관

40) 『朝鮮の聚落』(前篇), 686쪽; 충북지역의 농회는 1926년 1월 ‘朝鮮農會 令’의 발표로 동령에 따른 공공단체조합을 변경하여 각 군 공히 1926년 3월 중 창립총회를 열어 모든 것을 유효로 하여 총회를 끝내고 3월 말까지 도내 10군(忠淸北道, 『忠淸北道要覽』, 行政學會印刷所, 1928, 81~83쪽.) 忠北 음성군 農會, 충주군 農會 設立이 認可되고(『朝鮮總督府官報』 1926년 4월 16일, 21일) 이어서 보은군 農會, 영동군 農會, 청주군 農會 設立이 認可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26년 4월 16일, 21일, 27일, 5월1일). 忠淸北道農會의 設立도 認可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26년 6월 11일, 24일).

41) 文定昌, 앞의 책, 92~97쪽.

한 紛議 조정, 농사에 관한 전람회, 품평회의 개설, 농사시찰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농촌사회에서 농업경영을 좌우하였다.

일제는 전통적 농촌사회에서 상부상조적인 성격이 강했던 기존의 契組織도 농정에 이용하려 했다. 당시 契 중에는 농업에 관한 계도 다양하게 존재했다.⁴²⁾ 일제는 일찍부터 이 같은 契 조직을 동원하여 농정을 수행하고자 했다. 1910년 10월 총독의 각도 장관 훈시사항 가운데 「농업단체의 이용에 관한 건」에서

“원만한 행정의 진보는 주로 각종 조합단체의 발전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조선에서는 조선농회가 있고 …… 종래 각도에 존재하는 소위 계는 그 조직이 흡사 산업조합과 유사하다. 당국자가 이들을 잘 이용하면 농사개량 때 도움될 바 적지 않음으로 이를 조장하여 산업발전에 이용해야 한다.”⁴³⁾

라고 하여 식민지 농정 수행에 契조직을 이용토록 지시하였다.

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단체로 地主會⁴⁴⁾를 확대시켰다. 지주회는 총독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조직으로 지주 전체를 망라하는 지주회를 합방 후 착수하였다. 설립자체가 도가 정한 지주회 회칙규준에 의하여 군수가 회장, 군 서무주임이 부회장이 되는 식으로 완전히 위로부터 관제단체로 만들어졌다. 회원

42) 朝鮮總督府, 『朝鮮の契』, 1926, 27쪽; 1912년 당시 순수 농업에 관한 계의 종류만도 36개였다고 한다(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篇), 1944, 306~307쪽). 그러한 순수 농업에 관한 契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26년 당시 산업목적의 契가 2,187개, 101,443명의 契員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공공사업, 금융 목적의 契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훨씬 늘어난다.

43) 정연태, 앞의 글, 436쪽.

44) 총독부가 가장 힘을 기울였던 것은 지주회였다. 지주 전체를 망라하는 지주단체의 설치에 이미 병합 전부터 구상되었고, 병합 후에 곧 착수된다. 설립자체가 도가 정한 지주회 회칙규준에 규정되고, 또한 대개 군수가 회장, 군서무주임이 부회장이 된다는 식으로 완전히 위로부터의 관제단체로서 만들어졌다(堀和生, 앞의 글, 212쪽).

의 자격은 도마다 달랐는데 어떤 곳은 10정보 이상, 어떤 곳은 20결 이상의 토지 소유자라는 식으로 거의 중규모 이상의 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⁴⁵⁾

<표-4>전국 지주회 수 (1920년)

도별	회수	회원수	직원수	도별	회수	회원수	직원수
충북	10	1,933	3	황해	17	4,906	18
충남	10	7,278	0	평남	14	9,089	28
전남	1	442	2	평북	22	2,699	5
경북	22	60,540	41	함남	12	728	0
경남	16	5,888	3	계	124	93,503	100

자료: 『朝鮮農村團體史』, 65쪽.

이러한 지주회는 1910년대 지주회의 사업으로 지역 강습회, 품평회, 총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일제의 시책을 전하고 개량 농법이나 개량품종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었다.⁴⁶⁾ 그리고 1920년대에 들어가 그 주요사업의 범위를 확대시켜 우선 지주 본인들의 각성을 촉진하고 ①농사의 개선, 발달, ②소작 방법, 소작기간의 협정 등 ③지주 및 소작인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는 ①시험 경작답, 채종묘포 및 채종전의 설치, ②종묘의 배부, 대부, 교환 및 공동구입, ③비료, 농기구의 대여 및 그 구입자금의 대부, ④농사에 대한 강습, 강화, 소작미 및 입도 품평회, ⑤우량소작인 표창, ⑥기타 부업 및 저축의 장려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는 일제의 농정 방침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주회의 경비도 회원의 회비만으로 부족하여 지방비의 보조, 유지들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되었다. 그곳에서는 주로 충북 각지의 대지주들이 중심이 되어 지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도 농업의 개발 진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忠淸北道農會長 제안에 의한 각종 농업시

45) 文定昌, 앞의 책, 60~67쪽.

46) 『매일신보』 1916년 9월 12일.

설 희망사항에는 심의 강구한 결과 좌와 같이 협정하고 협력 일치하여 이의 실행을 기한다.”고 하며 타협안을 협정하였다. 그 내용은 1. 소작관행에 관한 件 ①小作權은 소작인이 특히 滋味 없는 행위가 있는 외에 해제치 않을 事, 그리고 마름으로 하여금 지주의 동의가 없이 소작지의 반환을 명하거나 또는 소작 조건을 변경치 못하게 할 것, 2. 마름의 인선에 대하여는 특히 용의하여 공정한 인물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변경치 말 것, 3. 소작인에 대하여 乾燥調製를 독려하고 우량 소작조를 납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獎勵의 의미로 1石에 對하여 5升 내지 1斗의 범위로 장려조를 교부할 事, 4. 소작인의 수납은 黨旗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斗概를 사용할 事, ①小作地에 사용하는 金肥代金은 打租할 경우에 地主와 소작인이 절반 부담할 事, ②金肥使用에 關한 件 旱水害의 염려가 없는 소작답에 대하여는 적당히 大豆粕 1매를 표준으로 구입 貸付할 事. 但 구입자금은 저리자금을 이용하여 小作人에게는 이익을 취치 말 것, ③自給肥料의 件 堆肥의 증산과 녹비의 제배로 성적 우량한 자에 대하여는 授賞할 方法을 講究할 것, ④ 전 각항 외에 道農會長 제안에 관한 희망사항은 가급적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⁴⁷⁾으로 농업에 있어서 소작에 관한 모든 것을 지주에게 유리하도록 정하였다. 이렇게 지주회는 식민지 농정에 충실하며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에 충실한 내용을 골자로 회의를 이끌어 갔던 것이다.⁴⁸⁾

한편으로 일제는 농민해방의식을 촉발할 신사상이나 사회운동이 농촌에 유지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탄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에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國家保安法’, 1925년 5월에 제정한 ‘治安維持法’⁴⁹⁾, ‘暴力行爲 등 處罰에 關한 法律’⁵⁰⁾ 등이었다. 그러

47) 『동아일보』 1927년 10월 6일.

48) 지주회는 각 지방행정기관의 방침에 따라 사업목적을 정했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회장 및 간사 1명은 군청직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사무실도 군청 내에 두고 있을 정도였다(文定昌, 앞의 책, 66쪽). 결국 지주회는 당국의 농업시책 특히 미작개량의 하청단체로서 존재했던 것이다(堀和生, 앞의 글, 213쪽).

나 이 법률은 농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일제의 식민지 농정을 충실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면을 농촌에 충투입시켰고, 법률적으로도 일제의 농정에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적인 법을 제정하여 농민들의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에 충실한 농민들의 저항적 행동을 통제하고 억압하였다.

3) 지주-소작제의 확대

산미증식계획은 식민지 경제수탈을 목표로 하는 일제의 식민 농업적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소작농민 또는 농업노동력의 극대화를 통하여 일제의 이익을 증대 시켜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리조합 설치로 개간지의 확보 및 한국인 농토에 대한 농업지배를 피하자는 것이다.⁵¹⁾ 이러한 식민농정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른바 지주-소작제라는 식민지 농정구조를 창출해 냈다. 이 농업구조가 충북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당시 충북지역의 경지면적은

<표-5>충북지역 경지면적

년도	田	畓		計	畝計
		1모작	2모작		
1918	90,047,6	51,637,5	18,704,8	70,342,3	134,304,7
1926	87,243,2	53,137,1	14,104,6	672,417	159,164,2
1929	88,127,8	56,194,8	14,841,6	71,036,4	160,389,9

49) 국제 혹은 정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령이었다 (조선총독부 편, 『治安維持法』 제1조, 『朝鮮法令輯覽』上-1, 10輯, 75쪽 (이윤갑,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소작정책 연구』, 지식산업사, 2013, 122쪽에서 재인용).

50)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빌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얻을 목적으로 폭력, 문서과기, 면회 요구, 협박 등의 행위를 한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51)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86, 98쪽.

자료: 『朝鮮の小作慣行』, 1931, 4~5쪽; 『朝鮮の聚落』(前篇), 662쪽;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8년.

비고: 단위는 町이다.

田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29년의 경우 田 55.4%, 畝이 44.6%로 田이 더 많은 곳이었다. 그러나 답의 경우 2모작을 하는 곳보다 1모작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크게 지주와 소작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표-6>충북지역의 농가종류

	지주		자작	자작겸 소작	소작	화전	계
	갭	을					
1917	493	2,034	17,764	58,961	52,033		131,285
1921	392	3,668	14,995	54,352	60,452		133,859
1927	383	3,174	16,299	48,279	64,545	458	133,128
1929	361	3,182	16,007	45,384	71,204	533	136,671
1933	587	2,601	14,763	33,113	85,767	1,471	138,203

자료: 『朝鮮の小作慣行』, 1931, 32쪽;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農地年報』제1집, 1935, 141쪽.

비고: 단위는 戶이다.

지주⁵²⁾와 소작인은 1921년 같은 경우는 지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3.03%였다가 1931년 2.3%로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고, 자작농의 경우는 변화가 없지만, 자작 겸 소작농은 1921년 40.6%에서 1933년 24%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소작농은 1921년 45.2%에서 1933년에

52) 지주 중에서 대지주는 20정보 이상, 중지주는 20정보 미만, 소지주는 5정보 미만, 자작농은 대는 3정보 이상, 중은 3정보 미만, 소는 1정보 미만, 자작 겸 소작은 대는 3정보 이상, 중은 3정보 미만, 소는 1정보 미만, 소작농은 대는 3정보 이상, 중은 3정보 미만, 소는 1정보 미만을 나타낸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주(갭)은 토지를 직접 농사하지 않고 소작인을 통하여 경영하는 지주를 말하고, 지주(을)은 자기 경영을 하고 일부를 소작지로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이종범, 앞의 글, 70쪽).

는 62.1%로 급격하게 늘어나, 1933년 당시 자작 겸 소작농과 순수 소작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86.1%를 능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86%를 넘는 농민이 소작 및 자·소작농인 영세 소농민이었다.

따라서 지주제는 이러한 농업조건 하에서 일제의 지주제 보호 육성 정책에 편승해 지주제를 확대 강화하려는 지주계급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했다.⁵³⁾ 지주들은 효과적으로 소작료를 수탈하고 소작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주제 자체를 정비 강화하였던 것이다. 당시 충북지역 지주 및 소작인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7>충북지역의 지주 증별 및 그 소작인수

구분	단양	제천	충주	음성	진천	청주	영동	옥천	보은	괴산	계
鮮人농장					25						25
內地人농장	548	35	64	115	169	972	467	70	241	104	2,784
內鮮人농장		59				8					67
내지개인농장	205	861	280	391	228	1,340	306	260	638	722	5,231
寺領地	16	65			3	31	11	12	130	64	333
宗契地	45	149	220	101	162	803	109	184	215	359	2,347
契	13	2	5		12			5			37
郷校地	120	9		63	63	134	63	60	55	103	670
면유지	111	126	9	179	146	118	149	46	162	202	1,248
부락지		10		8	8	29	18		24	17	114
不在地主	1,502	1,956	5,822	5,342	2,396	6,721	3,263	25,561	2,011	5,009	36,626
합계	2,560	3,272	6,400	6,199	3,212	10,156	4,386	26,198	3,476	6,580	49,482

자료: 「其ノ他小作ニ關スル重要事項」, 『朝鮮ノ小作慣行』, 1934, 78~80쪽.

비고: 단위는 호수이다.

충북지역의 지주들은 조선인의 경우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진천의 한 곳으로 유일했고, 소작인도 25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부분

53)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한국에서는 대량의 소작농이 창출되고 이들 소작농은 1인당 1.670정보를 소유하며 단보당 생산량이 불과 0.932전에 지나지 않는 영세 경영을 하며, 기형적인 소작제도가 시행되었다(주봉규, 「일제하 소작쟁의의 성격에 관한 연구」, 『경제논집』14권 4호, 1975, 18~19쪽).

의 소작지들은 일본인 농장이나 일본인 개인의 지주소속이 많았고, 대개는 부재지주의 토지를 소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에 청주지역에 소속된 소작농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충주, 음성, 괴산, 영동 등이 높았다. 청주, 제천, 충주, 보은, 단양 같은 경우는 일본인 지주들의 소작인도 많았다. 여기에는 당시 일본인 대지주들 30정보 이상의 농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표-8> 충북지역 일본인 소유 농장 현황

지역	소유지 면적			영농 종별	영농 방법	창립 시기	명칭
	답	전	계				
청주	31.8	193.5	592.4	과수,조립	자작, 소작	1910.4	弘益殖産會社
청주	200	100.0	300.0	보통농사	소작	1918.3	服部和郎
청주	81.8	32.8	114.6	농사,과수	자작, 소작	1910	홍익오송농장
청주	98.5	41.2	139.7	보통농사	“	1922.5	조선토지회사
단양	40.3	25.4	328.1	“	“	1924.1	동척합자회사
청주	29.0	183.1	212.1	농사,과수	소작	1913.2	홍익식산회사
청주	110.3	53.5	163.8	보통농사	“	1909.3	朝永토지회사
청주	119	66	189	보통농사	자작, 소작	1923	영조토지회사
청주	135	50	189	보통농사	“	1930.9	庄野농장
음성	38	42	154	“	“	1919	米山彌五七
충주	43	62	1,405	“	“	1927	鹽田禎介

자료: 『道勢一斑』, 1932, 20쪽; 『忠淸北道要覽』, 1928, 56쪽.

비고: 단위는 정보이다.

이들 역시 조선인 지주처럼 조선인 소작인을 대상으로 소작의 방법으로 토지를 경영관리 하였다. 당시 소작인들이 소작료를 납부할 때 그 비율은 지역에 따라 많아 달랐다. 이때 충북지역에 적용된 전답의 소작료 비율은 <표-9>와 같다.

<표-9> 1920~30년대 田畝 總복 小作料率

시기	구분	定租			打租			執租		
		최고	보통	최저	최고	보통	최저	최고	보통	최저
1920년대	畝	60	50	30	50	50	50	47	39	29
	田	70	40	30	50	50	50	-	-	-
1930년대	畝	73	50	20	50	50	50	75	50	5
	田	71	40	30	50	50	50	75	50	40

자료: 『朝鮮の小作慣行』上卷, 411쪽. 238~239쪽.

비고: 단위는 %이다.

즉, 1920~30년대 충청지역에 적용된 田畝의 소작료는 1920년대에서 30년대로 가면서 전의 경우는 최고액을 70% 정도에서 비슷했지만, 답의 경우 60%에서 73%로 크게 상승한 것을 보였다. 실제로 소작료는 1930년에도 보편적으로는 수확량의 50%를 바치는 것이었다. 즉 이른바 연간 수확량을 반분하는 반타작이었다. 그러나 풍요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및 기타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소작료가 90%에 가까웠다.⁵⁴⁾ 충청지역 같은 경우도 보통 70%를 넘어갔다.

그런데 충청지역의 소작기간은 “일반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주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계약이 해제된다. 보은 단양군 일대는 1년으로 기간이 약정되어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리고 근시 소작권 이동이 점차 증가하고, 년수도 차차 단축의 경향이 있다.”⁵⁵⁾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고, 소작료의 납부도 “답의 소작료는 현물로 납입하는 것을 통례로 하면서 청주, 진천, 괴산, 음성 등의 4군 지방에서는 중백미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심하지는 않다. 중백미는 쌀 1석당 3두 5승 내지 4두에 적합한 것이다.” 그리고 “보은군에서는 드물게 쌀을 시가로 환산해서 금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⁵⁶⁾라고 하여 거의 현물납이 주로 행해지고 있었다.

54) 이윤갑, 앞의 글, 153쪽.

55) 『小作慣行調査書』(忠淸北道), 1931, 57쪽.

56) 『朝鮮の小作慣行』, 1931, 198쪽.

이러한 농지의 경영관리는 지주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체로 지주들의 소작인에 대한 관리 및 지배 방식을 첫째, 지주가 직접 지배 관리하는 방식이고, 둘째, 마름 내지 대리인을 시켜 관리하는 방식이며, 셋째, 농감을 두어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졌다. 첫째 방식은 주로 재지 지주 중소지주가 많이 이용하였고, 둘째, 셋째 방식은 부재지주 내지 대지주들이 이용하였다.⁵⁷⁾

<표-10> 관내소작지의 관내지주와 부재지주의 비율(1931년)

군명	군내	도내	도외	군명	군내	도내	도외
청주	7.4	1.1	1.5	괴산	6.5	1.0	2.5
보은	7.1	1.4	1.5	음성	4.7	1.2	4.1
옥천	7.4	1.5	1.1	충주	6.3	0.7	3.0
영동	5.0	1.5	3.5	제천	8.0	0.8	1.2
진천	7.0	0.5	2.5	단양	5.7	1.5	2.8
평균	6.51	1.12	2.37				

자료: 『朝鮮ノ小作慣行』下卷, 續篇, 1932, 2~3쪽; 『小作慣行調査書』(忠清北道), 1931, 226쪽.

비고: 단위는 %이다.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 재지주주의 경우 도내지주는 76%로 도내지주의 경우도 군내지주는 65%, 도내지주는 11%였으며, 도외지주는 24%로 도외지주는 충남 30%에 이어 도외지주가 가장 많은 도에 속했다.⁵⁸⁾ 그중에서도 도외지주⁵⁹⁾가 가장 많은 곳은 음성, 영동, 단양, 괴산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둘째, 셋째 방식으로 농지경영을 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그만큼 마름이 차지하는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

57) 이윤갑, 앞의 글, 146쪽.

58)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發達篇), 1944, 62~63쪽.

59) 충북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마름을 통해 토지를 경영하는 도외거주 대지주는 경성의 조용호와 엄기범, 김사원, 오기정, 오동선 같은 조선인이 있었고, 중조평오랑이라는 일본인과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대표적이었고, 충남, 대구, 경기도 등에 지주가 있었다(『小作慣行調査書』(忠清北道), 1933, 227쪽).

의미를 가졌다.

<표-11> 마름수 및 1인 관리면적, 소작인수(1922년)

	마름수		1인 관리 토지면적			소작인 수		
			최대	보통	최저	최대	보통	최저
충북	한국인	4,143	100	12	0.5	587	20	3
	일본인	-	-					
충남	한국인	2,169	500	17.2	1.0	900	50	3
	일본인	126	344.3	69.5	3.0	520	125	1.0

자료: 『朝鮮の小作慣行』, 1930, 481~482쪽.

비고: 단위는 정보이다.

실제로 이러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충북지역에서 마름을 두었는데 마름 1인이 관리하는 토지는 충북지역 같은 경우 최대 100정보까지 있었지만 보통 12정보 정도를 관리했고, 소작인도 많은 경우에는 580명부터 작게는 20명 정도로 마름은 소작인들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마름은 지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경영했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지주에 대한 의무와 마름에 대한 이중적 의무를 감내해야 했고, 소작인들이 소작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작인들은 지주나 마름에게 많은 경제외적 강제도 감당해야 했다.

小作人は地主나 畝音輩에게 賄賂를 行한다. 此는 地主나 畝音이 말하자면 「吾等이 強制로 要求한 것 아니라 受動的 地位에 在하여 그들의 供餽하는 厚意를 却키 難하여 受할 뿐」이라고 바로 清白吏 가티 粉飾하겠지마는 그 內容을 窺할 시는 地主나 畝音은 小作人の 生命을 制하는 權限이 그 掌中에 잇슴으로 그들의 好意를 買할 必要上 如此한 舉에 出치 아니치 못할지라. 且 事實上 地主나 畝音 등은 此를 要望하는 者-多하며 裡面에 在하여는 此로 인하여 小作權이 左右되는 境遇가 居多하다. 此 이외에도 各種의 苛斂誅求가 있다. 此는 境遇를 인하여 又は 地方을 隨하여 各各異樣이다. 그 中에는 垂淚萬丈할 悲劇도 잇고 抱腹絶倒할 喜劇도 있다. 讀者의 興

味를 起키 爲하야 一例를 擧하야 볼가 한다. 權生員이라 하는 者가 李某의 田 1日耕을 小作하는데 李某는 親喪을 당하야 權에게 勞力을 徵하얏다. 權은 老人이라 喪輿人夫에 不適當으로 李某는 他 壯丁을 雇하야 送하라 하얏다. 權은 此에 應하느라고 5分邊 6圓을 借用하얏다가 가을에 至하야 自己所得 全部를 賣하야 겨우 此를 完償하얏다. 이러한 事는 農村에는 恒茶飯 잇는 일이다. 도저히 枚擧할 수 업슴으로 吾人은 筆을 此에 止할 뿐이다.⁶⁰⁾

이렇게 지주나 마름은 소작인의 생명을 制하는 권한이 그 손안에 있음으로 호의를 사기 위해서는 필요상 일을 해야만 했다. 충북지역에서 나타나는 마름의 가장 큰 폐해는 ①관리 토지 가운데 비옥한 토지를 자기 보수답으로 하고 불량지를 소작하도록 하며, ②소작권의 이동을 남용하고, ③소작료에 차액을 설정하여 이득을 얻었으며, ④소작농에게 무상노역 강요 등이었다.⁶¹⁾

한편으로는 부재지주 중 서울 및 먼 지방 지주는 그 관리인(마름)을 자주 변경하여, 관리인의 이동시 소작인의 변경 및 소작료의 증징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⁶²⁾ 소작지에 대한 재해 등에도 수선에 따른 불편한 점이나, 소작료 운반, 추수원의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였다.⁶³⁾ 또한 소작료는 종래 방식에 따라 징수하며, 무상노동 및 소작인이 지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예가 있었다.⁶⁴⁾ 이러한 지주제의 발달은 곧 농민의 빈궁화⁶⁵⁾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60) 「今日 朝鮮人の 小作關係」, 『개벽』제15호, 1921년 9월 1일.

61) 『朝鮮ノ小作慣行』, 1934, 483~484쪽.

62) 『朝鮮ノ小作慣行』, 1934, 10쪽.

63) 『朝鮮ノ小作慣行』, 1934, 10쪽.

64) 『朝鮮ノ小作慣行』, 1934, 12쪽; 전에는 지주가 바뀌어도 소작기간은 계속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소작인을 변경하든가 또는 소작계약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가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소작인의 권리도 점차 빼앗겨 갔기 때문이다(堀和生, 앞의 글, 247쪽).

65) 일제시대 조선 빈농층의 계급 구분의 기준은 지금까지 논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인정식은 빈농층의 계층적 기준으로 경작규모를 중심으로 파악하

4) 농민경제의 몰락과 농민층의 현실

1910년대 시작된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본격화된 농민층의 하강 분해현상은 산미증식계획이 진행되는 동안인 1920~30년대에 더욱 확대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에서의 산미증식계획은 한국농업과 농촌사회로부터 일본으로의 식량의 약탈은 증가시키는 반면에 그 비용은 모두 한국농민들에게 부담시켰으므로,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의 실시에 수반해서 한국 농민계급의 몰락을 급속히 가속화시켰다.⁶⁶⁾

<표-12> 春窮期の 絶糧農家の 戶數와 比率(1930년)

농가 종류	絶糧農家戶數	絶糧農家比率
자작농	92,304	18.4
자작 겸 소작농	323,470	37.5
소작농	875,111	68.1
총 계	1,290,885	41.3

자료: 『其ノ他小作ニ關スル重要事項』, 『朝鮮ノ小作慣行』, 1934, 24쪽.

비고: 비율은 %이다.

농촌사회의 중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자작농 층까지도 전체 자작농의 18.4%가 춘궁기에 절량상태에 들어갈 정도였고, 자작 겸 소작농층은 전체 자작 겸 소작농가 호수의 37.5%, 소작농층의 전체 소작농가 호수의 68.1%가 이른 봄부터 절량상태가 되어 春窮狀態를 경험해야 했다.⁶⁷⁾ 그리하여 이들은 생명을 유지하려 풀뿌리나 나무껍질을 벗겨 먹으며 견딜 정도였다.

여 빈농층을 자작농의 경우 1정보 미만의 경작규모, 소작농의 경우 남부 지역은 2정보, 북부지방은 3정보 미만의 경작 규모를 갖는 농민층으로 한정하였다. 장시원 및 강태훈은 빈농층의 지표로 자작농은 1정보 미만, 자작농 및 소작농은 2정보 미만의 경작 규모를 제시하였다(문소정, 「일제하 한국 농민가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62쪽).

66) 신용하, 『한국근대사회사연구』, 일지사, 1987, 337쪽.

67) 『朝鮮ノ小作慣行』下卷, 續篇, 112쪽.

그런데 소작농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다. 소작농은 소작지는 물론이고 가축, 농기구, 농가까지도 생산수단으로 이용해야 했고, 가족 또한 전부 농사 작업에 참여시켜야 했고, 품앗이나 두레 같은 협업조직을 이용해야만 농경이 가능했다. 소작경영의 이러한 특성은 소작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소작농으로 하여금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더구나 당시 조건에서 소작조건이 열악하고 수입이 적더라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였다. 식민지화 과정에서 상공업의 발달이 저해되어 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극도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농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 도시 빈민 또는 화전민으로 유랑하기 일쑤였고, 자칫 잘못하면 가족이 해체되고 결인으로 전락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소작농은 거의 전적으로 농업수입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었다. 소작인들이 찾을 수 있는 농외 수입원은 보통 가마니 짜기, 紫草 나무채취, 양잠, 양돈, 일일노동 등 이었는데 그 수입은 농가총수입의 5%를 넘지 못했다.⁶⁸⁾ 그리하여 1년 생활을 위해 농민들은 차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표-13〉 충북지역 小作農 借財戶數 비율 및 借財額

군명	借財 戶數 比率	보통 借財額	최고 借財額	차재액 많은 자
단양	84	34	283	자작 겸 소작농
제천	71	30	180	동
충주	69	40	265	동
음성	87	27	242	동
진천	84	29	125	순소작농
청주	85	51	488	자작 겸 소작농
영동	77	45	471	동
옥천	81	42	311	동
보은	78	49	300	동
괴산	75	36	431	동
평균	79	38	310	

자료: 『朝鮮ニ於ケル小作ニ關スル參考事項摘要』, 『朝鮮ノ小作慣行』 1934, 146쪽.
비고: 비율은 %이다.

68) 『朝鮮ノ小作慣行』下卷, 續篇, 125쪽.

차재호수가 소작농 중 평균 79%에 이르고, 그 액수는 최고액으로는 310원, 보통은 38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소작농들은 생활을 할수록 빚만 늘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농민들이 차용할 수 있는 부채는 금융조합의 경우 이자가 연 10%, 개인 고리대의 경우는 연 40%나 되었는데 소작농들의 경우 금융조합에서 대부분을 조건은 아니었다.⁶⁹⁾ 때문에 소작농들은 할 수 없이 개인 고리대업자에게 빚을 질 수 밖에 없었으며,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파산하여 고향을 버리고 외지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주하지 않고 남아 있는 대다수의 소작농은 빈곤한 생활을 하며 가난에 허덕이어야만 했다.⁷⁰⁾ 그리하여 가난한 소작인들 중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주로부터 자기 거주하는 지역의 택지 및 가옥 등을 차입하여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표-14> 소작인 중 가옥 및 家屋地 借入 居住 소작농 호수

지역	가옥, 택지	택지	계	지역	가옥, 택지	택지	계
단양	81	5,027	5,108	청주	814	13,688	14,502
제천	300	6,987	7,287	영동	971	4,565	5,536
충주	219	7,969	8,188	옥천	359	6,172	6,531
음성	393	7,284	7,677	보은	288	4,490	4,778
진천	246	4,524	4,770	괴산	458	10,715	11,173

자료: 『朝鮮の小作慣行』, 1931, 101쪽.

소작농으로서 자기 경작지의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가는 부채와 소작료의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부분 소작인들은 생존하기 위하여 농작의 회전주기 중 어느 시기에 부채를 얻지 않을 수 없었다. 고리대업자 및 그 중 개인계층은 이러한 이용을 이용하여 연간 60% 내지 70%의 이자를 빼앗아 갔다.

69) 姜萬吉, 『日帝時代貧民生活史研究』, 創作社, 1987, 112쪽.

70) 강만길, 앞의 책, 112쪽.

소작인들은 소작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다른 부담도 감내해야 했다. 이것은 무보수로 하는 노동봉사와 설날에 지주에게 주는 선물과, 소작료 이외에 세금까지 부담하는 것 등이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가족의 목숨을 연명하기도 힘든 작은 농토를 경작하는 일반소작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었다.⁷¹⁾

그리하여 매년 춘공을 겪으면서도 고리채를 만성적으로 누증시켜 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규모의 영세화는 결국 농가수입의 절대액을 감소시켜 농민경제를 貧窮化시켰고, 동시에 소작농들 사이에 借地경쟁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다.⁷²⁾ 1921년 제천 농민의 실상으로 소작농이 겪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朝鮮에 在한 小作人의 地位가 重且大함은 前項에 述함과 如하거니와 如此히 重且大한 地位에 在한 小作人이 如何한 待遇를 受하는가 함에 大하야는 吾人이 說함에도 戰慄할만하게 悲慘하다. 世界人類중에는 朝鮮의 小作人보다 더 悲慘한 生活을 하는 者는 絶無하리라. 참 朝鮮의 農村이야말로 世界 唯一의 地獄이다. 人을 咀呪하거던 朝鮮農村의 小作人이 되라 하라. 地獄이 如何히 惡을 極할지라도 우리 農村보다 더 심하리라고는 想像치 못하겠다. 彼等은 社會上으로 奴隸의 待遇를 受하고 經濟上으로 禽獸의 生活을 營한다. 終歲耕農하야도 食할 米가 無하고 着할 衣가 無하야 飢寒은 彼等の 天定運命과 如하다. 農民을 見할 시는 舉皆營養不足으로 인하야 體質이 虛弱하고 生産率이 減少된다. 此狀態에 至하야는 도저히 賃銀 勞働者의 그것과 同日에 論할 바이 아니다. 茲에 彼小作人의 受하고 잇는 苦痛의 大略을 具體的으로 述코자 하노라.⁷³⁾

71) 『朝鮮の小作慣行』, 1931, 218~221쪽.

72) 일본인들은 충북지역에 농업투자가 유리하고 좋은 이유를 ①토지 가격이 싸다. ②경지를 구매하기가 쉽다. ③토지에 대한 세금 등 부담이 적다. ④농사 재배법을 개량하여 수확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곳(村上友次郎, 『最近之忠州』, 1914, 15~16쪽)으로 보면서 많은 토지 증대를 꾀하였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 소작농들은 소작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 농민들은 1931년의 농촌사정인데 별반 나아진 것이 없이 더욱 나빠지기만 하였다.

근일 청주군에는 궁춘을 당함에 따라 乞人群이 대단히 격증되어 매일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우나 청주시내만 하여도 60~70명에 가까우리라 하며 그중에는 결인으로서의 태도가 없고 어디로 보든지 결인으로 보기가 어려운 자가 많이 있는바, 육체가 성하며 순수한 농민 같은 자가 많아 그들을 만나보면…… 본시 농사를 하였으나 하등의 수입이 없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 남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도회에 와서 노동이라도 하려 하나 그것조차 자리가 없어 이리저리하다 배는 고프고 기운은 탈진하여 에라 할 수 없다하고 구걸하기를 시작한 것이요, 이것을 누가 하고 싶어합니까 한다.⁷⁴⁾

실제적으로 1933년의 조사에 의하면 충북지역의 조선인 중에서 겨우 생활하는 이들은 220,197명, 다른 구제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자가 29,294명, 결식 또는 이와 같은 방법에 의존하는 자 7,861명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⁷⁵⁾ 이렇게 극심한 건디기 어려운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농민들은 어떤 행동이든 선택해야 했다.

3. 농민운동의 전개

1) 농민운동의 개관

1920년대 들어서 이른바 지주-소작제의 모순이 날로 격화되어 농촌

73) 「今日 朝鮮人の 小作關係」, 『개벽』제15호, 1921년 9월 1일.

74) 『조선일보』 1931년 3월 24일.

75) 李如星, 金世鎔, 앞의 책, 14쪽.

사정이 악화되자 농민들은 소작쟁의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항상적 사건이 되었다. <표-15>는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소작쟁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15>충북지역의 소작쟁의 발생 건수

년도	충북 건수	충북 인원수	전국 건수	전국 인원수
1921	1	14	27	2,967
1922	2	2,455	24	3,539
1923	10	2,422	176	9,060
1924	2	98	164	6,929
1925			11	2,646
1926	3	99	17	2,118
1927			22	3,285
1928	2	673	30	3,372
1929	2	83	36	2,620
1930	6	14	92	10,037
1931	1	41	57	5,486
1932	2	30	51	2,910
1933	1	186	66	2,492
1934	6	120	106	4,113
1935	5	123	71	2,795

자료: 『朝鮮の小作慣行』, 1931, 59쪽;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巖南堂書店, 1933, 157쪽;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巖南堂書店, 1938, 97~99쪽; 『朝鮮農地年報』第1輯, 1940, 9~11쪽.

비고: ①충북지역 건수는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巖南堂書店, 1933, 157쪽 자료이다.

표를 보면 소작쟁의는 1921년~25년까지만 보더라도 1921년 1건 14명, 1922년 2건 2,455명, 1923년 10건 2,422명, 1924년 2건 98명이 참여한 소작쟁의가 있었다.⁷⁶⁾

76)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8, 97쪽.

이들은 이곳에서 고율의 소작율 반대, 지세의 지주부담, 소작권박탈에 대한 항의, 마름의 중간 수탈반대, 지주와 마름에 대한 무상부역 반대, 소작료징수 방법에 대한 개선 등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쟁의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1926년에서 30년 사이에도 통계상 소작쟁의는 26년 3건, 27~28년 2건, 30년에는 6건으로 극히 저조한 소작쟁의가 일어났다.⁷⁷⁾

충북지역에서 1910년대 추진한 토지개량사업의 영향으로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실시 기간에는 농업상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첫째, 소작인은 소작료가 높게 올라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둘째, 종래 定租인 것도 몽리구역은 打租로 고치는 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작인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 셋째, 조합비 및 조세 공과금 등을 지주의 부담으로 하고 수확물을 지주 6할 소작인 4할로 하고 있는 것, 넷째, 소작인은 비를 반액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을 증가시킨 것 등이었다. 그리고 특별히 첫째, 구역 내는 종래의 전을 담으로 지목 변환시키는 자가 많기 때문에 농가의 주요 식량인 잡곡이 없이 상당한 곤란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수리 윤택하여 수확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주는 이것을 구실로 종래의 소작료에다 2할 내지 3할까지의 소작료를 인상시켜 높게 오른 것 등이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⁷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작쟁의가 발생하고 참여하는 인원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점은 일제하에서 식민지권력의 탄압과 지주 소작인 통제망을 뚫고 소작인 의식 속에 남아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인식을 극복하면서 소작인을 농민운동의 주체로 결집시켜 대지주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즉 농민들이 처한 경제적 조건에서 보면 농민운동이

77) 충북 지역 소작쟁의의 발생건수에 대해서 조선총독부 농림국에서는 1920~1924년도 15건, 1925~1929년에 53건, 1930~1943년도 239건, 1935년~1939년 13,775건으로 1920년대 중반 이후 소작쟁의의 발생회수가 위 통계와 다르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朝鮮農地年報』, 1940, 8~9쪽).

78) 『小作慣行調査書』(忠淸北道), 224~225쪽.

발생할 개연성은 매우 높지만, 그것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⁷⁹⁾

따라서 이들을 조직하고 농업수탈기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회운동가의 농민대중과의 결합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대개 농민운동의 발생지역은 공통되게 청년운동이나 사상운동이 직접 농민운동에 관여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때문에 무지하고 즉자적인 소작농들을 주도하여 지주나 당국에 고을의 소작을 반대, 지세의 지주부담, 소작권 박탈에 대한 항의, 마름의 중간 수탈반대, 지주와 마름에 대한 무상부역 반대, 소작료 징수 방법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요구사항은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소작농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조건에 맞는 운동을 전개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 시기의 소작쟁의는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대한 소농민의 재생산확보를 둘러싼 지주와 소작농민의 공방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⁸⁰⁾

농민운동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청년회나 노동공제회 혹은 사상운동 단체들이 소작인조합이나 농민조합의 결성을 주도하였고, 그 구성원들이 농민조직의 지도자가 되어 농민계몽이나 소작쟁의를 주도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지도 내지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의 지도와 농민조직이 공제적인 집단 활동에 힘입어 이들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대자적인 계급의식과 권리의식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지주에 대하는 농민들의 자세가 봉건적 굴종성을 벗어버리고 비판적이고 대항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79) 주봉규는 농업생산력에 따른 소작쟁의와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1920~30년대 소작쟁의는 1920년대와 비교하여 1930년대 생산력이 정체 내지 감소한 지역에서는 소작쟁의가 압도적으로 나타나지만, 30년대 들어서 생산력이 증가한 곳에서는 30년대 소작쟁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주봉규, 소순열, 『근대 지역농업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76~78쪽). 이것은 생산력의 발달이 소작농민의 대지주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게 된 기반이 되어 생산력이 빨랐던 곳은 조기에 지주제의 모순이 발현되었던 것이라고 보았다.

80) 주봉규, 소순열, 앞의 책, 78쪽.

1925년 조선공산당의 창립 이후 농민운동은 새로운 발전기에 들게 되었다. 1925년 말에 이르면서 노농의 분리 움직임, 농민조합의 결성, 단일 전선운동의 적극적 지지, 대중운동의 강화 등을 거치면서 전개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이 시기 농민운동 조직을 소작조합에서 농민조합으로 개편하고, 소작농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주제와 농업정책을 모순으로 여기고 있던 중농, 소농까지 포괄하는 농민운동조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의 건설이란 조선공산당 운동과 떨어져서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청년운동, 신간회운동, 노동운동 등과 결합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청년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이 농민조합을 결성하고 농민운동을 지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농민조합들은 모두가 농민 대중 조직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진 청년 혹은 사회운동가들의 “농민을 위한 사회단체 즉 외부로부터 先位の運動을 함에 불과한” 농민조직이었고, 그 활동 또한 농민해방과 농민권의 향상을 위한 공세적이고 직접적인 대지주 투쟁보다는 야학이나 집회 등의 농민계몽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1926년 이후 설립되는 농민조합의 대부분이 그러하였다.

그러면서 1920년대 중반부터는 단순히 소작농뿐만 아니라 자작농, 자소작농까지 포괄하는 농민조합이 전국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1920년대 후반 내지 1930년대에 설립된 것들은 조직의 성격상 소작인 조합보다는 농민조합에 가까운 것이었다.⁸¹⁾

그러나 1928년 조선공산당이 해산되고 좌우 합작이던 신간회마저 1931년 해소되면서 공산주의는 비합법적 운동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 소위 ‘치안유지법’이 시행된 이후 조선공산당계열이 농촌에서 활동거점을 마련하면서부터 경찰관서의 습격 등 과격한 행동을 보여주는 적색농민조합이 전국 각지에서 조직되었다.⁸²⁾

81) 김석근, 「1930년대 한국농촌공산주의 「적색농민조합운동」 연구」, 정신문화연구원박사학위논문, 1991, 60쪽.

82) 김석근, 앞의 글, 34쪽.

2) 소작조합의 농민운동

1920년대 전반에 농민운동의 주류는 소작쟁의로 나타났다.⁸³⁾ 대개 소작쟁의는 농민들의 제반 소작조건의 개선에 목적을 둔 소작인조합 형태로 전개되었다.⁸⁴⁾

충북지역의 소작인조합은 1922년 1월 제천군에서 소작인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천 소작인조합은 1922년 1월 제천 봉양면 소작인 1,153명이 중심이 되어 ①소작료의 인하 ②지주의 조세 부담 등을 내걸고 지주 측에 대항하며 조직한 소작인 조합이었다. 이후 괴산, 진천, 음성 등지에서 소작인조합이 속속 결성되었고, 이들이 주체가 된 대규모 소작쟁의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소작인조합은 거의 청년, 사상, 사회운동의 지도와 지원 하에 조직되고 활동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활동방식이나 발전양상은 이들이 소작농민과 결합하는 방식은 대개 두 유형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농민조직 주도형으로 이들이 농민조직의 결성을 주도하고 직접 지도

83) 조동걸, 앞의 책, 111쪽. 충북지역 소작쟁의의 본질은 재지 일본인이 소유한 농장과 일본 개인이 소유한 농장의 소작인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일본인 소유의 토지나 농장을 대상으로 한 소작쟁의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모든 소작 쟁의는 조선인 관내지주나 부재지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소작쟁의는 소작인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지주에 대한 항거이며, 동시에 농촌사회의 체제적 모순에 따른 계층간 불화가 경제위기의식을 조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4) 소작인조합은 소작인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로서 그들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활력소가 되었다. 소작인 단체들은 지주들에 대해 소작료의 인하, 소작권의 안정 등 소작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압력단체와도 같은 기능을 하였다. 소작인단체는 소작인들을 선동하기도 하여 소작쟁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지주와 소작인들 사이에 서서 중재를 하기도 했다. 또 지주들이 부당한 처사를 하면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소작권을 무리하게 변경하거나 할 경우에는 같이 경작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소작인에게 그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하였다. 소작인 조합 내지 단체들은 소작인들에게 집단행동의 힘을 알 수 있도록 단체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조직적인 기반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김석근, 앞의 글, 34쪽).

부가 되어 농민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상, 청년단체 주도형으로 노동공제회나 청년회 등의 사회운동조직이 외부에서 농민조직의 결성과 활동을 지휘 내지 지도하는 방식이었다.⁸⁵⁾

충북지역 같은 경우 첫째 유형으로 조직된 소작인조합은 확인 할 수 없고, 둘째의 경우로 조직된 소작인조합은 조선노동공제회의 영향으로 설립된 제천 풍양리 소작인회를 시작으로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등 6개 군이 이에 속했⁸⁶⁾ 조선소작인상조회의 주도로 그 설립이 이루어진 청주, 충주, 영동소작인 조합이 있었다. 그 중 1922년 조선소작인상조회 지회로 청주지회와 충주지회가 설립되었⁸⁷⁾ 그 외에 음성 소이면 소작인회(1923. 2. 26), 영동 소작인상조회(1923. 12. 10), 청주 산동소작인 공조회(1925. 12. 5), 제천 덕산농업조합(1926. 7. 24), 괴산 칠성면조작인조합(1931. 12. 31) 등이 조직되었⁸⁸⁾

괴산 소작인회, 산동 소작인공조회, 영동 소작인상조회를 대표적 사례로 선정하여 조직 및 활동상의 특징을 살펴본다.

(1) 괴산군 소작인조합

1919년 3·1운동 이후 민족주의에 입각한 각종 단체가 1920년대에 들어가 전국 각지에서 여러 단체가 탄생하였다. 그때 가장 많은 단체를 차지했던 것은 단연 청년단체였다. 당시 우후죽순처럼 탄생하는 청년단체에 대해 당시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청년의 모임은 전국에서 하루에 적어도 10여 처씩이요. 현금 서울에서만 남녀 청년의 모임은 70여 처씩이나 되나 제가기 활동하고 날마다 강연이니 연설이니 하여, 밖으로는 사회의 깊은 잠을 깨우기에 힘쓰고, 안으로는 자체수양에 힘쓰고 있다.⁸⁹⁾

85) 이윤갑, 앞의 글, 148쪽.

86) 강훈덕, 앞의 글, 80쪽.

87) 홍영기, 『1920년대 전북지역 농민운동』, 한국학술정보, 2006, 149쪽.

88) 강훈덕, 「일제하 농민운동의 일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9, 83~85쪽.

1920년 8월 5일에 들어와 괴산지역에서도 청년 유지 층에 속하는 柳文珪⁹⁰⁾ 宋鐘泰 외 10명의 발기로 괴산읍내의 야소교회당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회장은 유문규, 총무 金永奎⁹¹⁾ 덕육부장 김사원, 지육부장 유문규, 체육부장 김태웅 등 지역유지들이 피선된 후 일반의 진행 방침을 토의하고 폐회하였는데 당일 義捐金額이 2천여 원에 이를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⁹²⁾

괴산청년회는 첫 사업으로 괴산공립보통학교에서 노동야학을 개시하고 수업자에 대한 일체 학비까지 동회에서 부담하기로 한 바 열심히 수업하였고, 노천교육도 실시하여 시장통 3~4개소에 게시판을 건설하고 공중에 대하여 풍속개량과 지식개발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매시 일 이용하며 1개월에 6회씩 개양하였다.⁹³⁾

한편으로는 풍속개량, 미신타파를 위해 연극공연 및 순회강연을 하고, 금주 금연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⁹⁴⁾

괴산청년회 1921년 4월 16일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무의 경과 보고가 있는 후 회계보고 및 예산을 통과하고 순서에 의하여 임원을 개선한 바 회장은 이재익, 총무는 유문규, 서무는 김규웅, 산업은 백완기, 덕육은 김웅철, 지육은 경황, 체육은 홍치희, 고문은 이재광, 평의장으로는 김태웅, 평의원 14인이 피선되고 중요 안건을 결의한 후 폐회하였다.⁹⁵⁾

이후 8월에는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괴산청년회 창립기념식을 회장 주관 하에 개최하고 무사히 폐회하였는데 당시 참가 인원은 500여

89) 『동아일보』 1920년 6월 30일.

90) 유문규는 당시 『동아일보』 괴산분국 주임기자였다(『동아일보』 1921년 12월 7일).

91) 김영규는 당시 『동아일보』 괴산지국장이었다(『동아일보』 1929년 5월 14일).

92) 『동아일보』 1920년 5월 10일.

93) 『동아일보』 1920년 9월 18일.

94) 『동아일보』 1921년 6월 15일.

95) 『동아일보』 1921년 4월 25일. 처음 설립될 당시와 비교할 때 청년회의 간부진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명에 달할 정도였다.⁹⁶⁾ 이때 기념식을 통해 사업을 반성하고 연혁보고와 회원대표 등으로 축사 등을 통하여 청년회 사업을 돌아보았다.⁹⁷⁾ 괴산청년회는 민족교육을 위해 ‘보성의숙’을 설립 운영하고 노동야학과 여자야학을 펼쳤다.⁹⁸⁾

괴산청년회는 1922년 괴산군 내 연풍지역에서 소작인 100여 명이 참여하는 소작쟁의를 일으켰으나 별 소득이 실패하는 것을 보자, 조선노동공제회의와 연계하여 괴산군 연풍면 소작인들을 중심으로 1922년 12월 21일 소작인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회 및 창립총회를 동시에 열고

- ①답의 수확물은 지주와 소작인간의 반분제로 하고 공과금 일체는 지주가 부담할 것.
- ②垵及田은 賭租制로 하고 공과금은 지주의 부담으로 할 사
- ③2모작 수확물은 전부 소작인에게 부여할 사
- ④소작료의 운반은 一里 이상 거리에는 지주가 부담할 사
- ⑤각 지주는 소작조합에 토지 관리권 일체를 위탁할 사

결의하였다.⁹⁹⁾ 그러나 이러한 소작인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1923년에 1월 괴산군내 연풍면, 장연면, 칠성면, 감물면, 소수면 등 6개면 소작인들은 “작년 음력 10월경 지주의 횡포한 행동과 자본주들의 발호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작인 조합을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3월 15일 6개 면의 소작인 2,000여 명이 괴산청

96) 『동아일보』 1921년 8월 19일.

97) 『동아일보』 1921년 8월 19일.

98) 『동아일보』 1923년 5월 10일, 괴산청년회에서는 신학기 아동의 입학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관에 강습소를 설치하고 아동 60여명을 모집하여 무료로 신기휴, 정진석, 김순기 등 청년회원들이 교육을 담당하였다.

99) 『동아일보』 1922년 12월 28일. 청주출신이었던 신백우의 조선노동공제회의 조직 과정 속에서 괴산지역에서는 괴산소작인조합이 결성되었다고 한다(畝夫 申伯雨先生記念事業會, 『畝夫 申伯雨』 서울신문사, 1972, 115쪽). 이것으로 볼 때, 신백우는 충북지역 중 청주와 그 주변의 초기 노동이나 농민의 단체조직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년회관에서 農民大會를 개최하였다. 이때 괴산 경찰서의 경찰 전원이 출장하여 회장의 안팎을 엄중히 경계하며 각 면에서 요구한 조목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여섯 면 소작인들은 강경한 태도로 듣지 아니하였다.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평의원 趙世基는 ‘농촌의 통곡성’이란 제목으로, 宋健稷은 ‘소작인 생활상태’라는 주제로 농촌사정을 적절히 말하여 박수를 받으며, 요구사항으로 8개 항을 결의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¹⁰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畚의 小作料는 총 수확의 4割 이내로 할 일
- ②田 및 垡에는 舊例賭租에 의하되 加俸換算 등은 일체 폐지할 일
- ③小作料를 斗量할 때에는 斗概를 사용하여 공평을 圖할 일
- ④小作權은 地主 또는 管理者라도 任意移作치 못하고 부득이한 때는 本組合 과 협의 결정할 일
- ⑤地稅 및 公課金은 일체 지주가 부담할 일
- ⑥地主 및 管理人の 斗稅 및 無償使役을 폐지할 일
- ⑦小作料 運搬은 1里 이내에만 소작인이 부담할 일
- ⑧堤堰 防築 開墾 등 일체 工事は 地主가 부담할 일(단, 金 1圓 이내의 비용은 소작인이 부담함)

설립을 마친 소작인조합은 “1921년도 地稅改正에 의하여 지세는 지주가 부담하기로 기타가 열섬 쌀을 추수하는 땅이면 너 섬을 지주에게 주고 여섯 섬은 소작인이 먹기로 주장하였으나 지주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추수는 꼭 반씩 나누어 먹고 지세도 반씩 나누어 물기로 고집함으로 필경은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군청이나 경찰서에서는 편협한 태도로 항상 태도로 항상 지주를 옹호하고 貧寒에 빠져 죽어가는 소작인들을 조금도 돌보지 아니하여 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가산집물의 집행을 여지없이 하고, 또 지주들은 소작권을 빼앗아서 일반인의 생활을

100) 『동아일보』 1923년 4월 4일; 주봉규, 앞의 글, 78쪽.

점점 비참해졌다”라고 하며 경찰서와 군청은 물론 이곳 지주들에게 진정서와 決意書를 제출했다.¹⁰¹⁾ 그 후 소작인조합 대표들과 청년회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성에 올라가 경성에 있는 지주들을 찾아다니며 자기들의 사정을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서울에 있는 지주들도 그들의 사정을 듣고 못이기는 척, 소작농들의 주장을 들어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소작인조합을 주도하던 괴산청년회가 1920년대 중반에 들어와 활동력을 잃고 유아무야한 상태가 되었다. 『동아일보』에서는 이것을 잘 지적하고 있다.

벌써 6년이 지났다. 외관상 회원은 300여명이고 천여 원 가치의 회관과 보성의숙과 신문지국을 경영하고 있으나 그 필요한 사업이 많다. 그것은 지덕체교육, 풍속개량, 자선사업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런데 그 못하는 이유는 첫째, 회원 계군의 열심 부족, 둘째, 회중의 기본 경제의 부족이다. 본회에 열심인자 일어나 있는가? 의연금을 낸 자 있는가? 입회한지 4~5년에 입회금 1원 또는 월연금 20전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회원이 얼마나 많은가? 기왕 설립한 청년회를 무의미하게 하지 말고 멸망치 않게 발전하게 하여 청년회를 부흥하게 하려면 …… 102)

괴산청년회는 자금부족, 회원의 열의 부족 등으로 기자의 표현대로 멸망되어 가고 있었다. 따라서 그 지도하에 활동하던 괴산 소작인조합도 더 이상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¹⁰³⁾

101) 『동아일보』 1923년 3월 8일.

102) 『동아일보』 1925년 3월 26일.

103) 총독부가 조사한 충북지역 각종 단체조사에는 소작인조합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3, 166~168쪽).

(2) 산동 소작인조합

청주지역에서도 1920년에 들어오면서 여러 개의 사회운동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유지들은 지역사회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청주 지역 유지 95명은 淸州俱樂部를 조직하였다.¹⁰⁴⁾

그러나 일부 청주 유지들은 이와는 별도로 1920년 6월 19일에 청주 영좌극장에서 청주청년회를 설립하였다. 청주청년회는 청년의 지성과 사회개조를 통하여 文明社會建設을 위해 노력하며 品性向上, 知性開發, 體育獎勵, 風俗改良의 4대 행동강령을 수립하였다.¹⁰⁵⁾

청주청년회는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며, 각종 스포츠 보급 및 체육진흥 활동과 연극공연, 『동아일보』 지국 경영, 생활개선 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였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1922년에는 도시 정화사업으로 일제가 경찰서의 무덕전을 세우기 위해 망선루를 헐기로 하자, 망선루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결국 청주청년회는 회원들과 지역유지들의 후원으로 충청북도 경찰서로부터 망선루를 인수할 수 있었고, 망선루는 청남학교와 청년회사무실로 사용되어 청년회 행사 및 각종 강연회, 한극 강습회 등 여러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또한 청주 성경학교, 상당유치원, 야학장소로도 사용하였다. 이렇게 청주청년회는 개량주의적 지역 유지층이 중심이 되어 주도되었다.

그런 모습은 1925년 2월 임시총회를 통해 강령으로 채택된 ①청년운동의 促進을 期함, ②생활제도의 改善을 圖함, ③시대에 順應할 문화의 향상을 期함¹⁰⁶⁾을 볼 때도 아직 개량주의적인 유지층 중심의 청년운동의 방향은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당시 대두되는 소작농들이 중심이 된 소작쟁의를 해결하기

104) 『매일신보』 1920년 3월 14, 23일.

105) 개량주의적인 운동단체의 활동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활동목표이다. 박찬승, 『한국 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를 참조할 것.

106) 『동아일보』 1925년 3월 3일.

위해서 청주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조선소작인공제회의 청주지회를 결성하였다. 하지만 그 활동은 확인 할 수 없다. 아마도 1924년 이후 중앙의 조선소작인상조회의 그 존재 의미를 잃고 유명무실해지자 당달아 청주의 조선소작인상조회 지회도 그 자취를 감추었을 것 같다.

산동지역에서도 소작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산동지역의 소작인들은 개별적으로 소작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산동지역의 3면(미원, 낭성, 청천)에 있는 소작농들이 모여 소작료 및 소작제도 전반에 대한 불만을 소작문제로 부각시켰다. 그러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원의 유지(金容直, 柳和錫, 申健雨, 趙東煥)들이 중심이 되어 소작인조합의 결성을 발기하고 山東小作人共助會를 조직하였다. 여기에서 宣言과 綱領도 채택하였는데 선언은 알 수 없으나 강령으로 표현된 내용을 보면

소작인과 지주 간의 우의를 돈독케 하여 악습을 개량하여
미풍을 조장하여 現下 부득이 발생하는 소작쟁의를 범률이
許하는 범위 안에서 극력 助進케 함

라고 하며 결의 사항으로

- ①소작인의 근검저축으로 선행을 장려함
- ②지주 및 마름의 무리한 행위를 각성케 함
- ③소작인 폭리와 나태를 改良케 함¹⁰⁷⁾

이라 하여 소작인과 지주간의 우의를 돈독케 하여 악습을 개량한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보면 조합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소작인조합은 지주중심의 소작인 회유를 위한 조합이었던 것이다.¹⁰⁸⁾ 그러나 자료의 부족으로 더 이상의 내용은 알 수 없다.¹⁰⁹⁾

107) 『동아일보』 1925년 12월 15일.

108) 산동 소작인공제회는 소작인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설립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소작인조합의 성격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

(3) 영동 소작인조합

1920년 영동지역에도 영동청년회가 처음 조직되었다.¹¹⁰⁾ 영동청년회는 1920년 8월 다수의 청년이 운집하고 지방 인사의 찬조를 표하는 의연금에 불소한 상태에서 영동청년회가 창립되었다.¹¹¹⁾

그 후 영동청년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는 제반사항을 결의하고 새롭게 피선위원을 선출하였는데 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장준, 부회장이재영, 덕육부장 김행하, 학예부장 김극수, 체육부장 성동만, 서기 김(진)¹¹²⁾ 등이었다.

영동청년회는 위생사업을 필두로, 5군 연합 정구대회를 개최하고, 소인극 공연단을 조직하여 무주, 금산, 옥천 등을 순회 공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¹¹³⁾ 또 청년회 명칭은 아니었으나, 청년회의 간부였던 장준은 계산학원이라는 사설강습소를 개설하여 배움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농민들에게 지식의 보급을 행했다.¹¹⁴⁾

그러나 영동청년회는 1922년이 되자 유아무야한 단체가 되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청년회 회관 건립문제가 제기되었고, 영동지역의 유지들과 청년회간부들의 노력으로 청년회관을 건립하였다.¹¹⁵⁾ 청년회관을 창립한 후 서울에서 김철수, 최린, 안신행 등을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강연의 제목은 김철수가 ‘사회 진화와 협동운동’을, 최린이 ‘반성’을, 안신행이 ‘여자도 사람임을 자각하라’ 등이었다. 이 강연회는 청중이 600여 명이나 모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¹¹⁶⁾ 이런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09) 그러나 신건우는 신백우, 이종원 등과 함께 산동청년회를 중심으로 산동농우회의 전위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활동은 산동농우회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0) 池中世 編譯, 『朝鮮 思想犯 檢舉 實話集』, 신광출판사, 1946, 81쪽.

111) 『동아일보』 1922년 2월 7일.

112) 『동아일보』 1921년 10월 6일.

113) 『동아일보』 1921년 10월 13일, 19일, 20일, 1922년 2월 7일.

114) 『동아일보』 1924년 12월 13일, 1926년 1월 9일.

115) 『동아일보』 1922년 4월 4일, 6일, 9월 22일, 10월 28일.

강연회와 더불어 영동청년회는 청년회의 운영방식을 회장제에서 집행 위원제로 바꾸는 진흥을 꾀하였다.¹¹⁷⁾

그러나 청년회의 부흥은 성공적이지 못했다.¹¹⁸⁾ 결의 사항으로 채택한 내용도 ①소작인의 근검저축으로 선행을 장려함, ②지주 및 마름의 무리한 행위를 각성케 함, ③소작인 폭리와 나태를 改良케 함¹¹⁹⁾이라고 하여 지주 위주의 내용들이 결정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금일 사회운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상을 순화하여야 하겠다는 필요를 느끼고, 5월 17일 영동청년회관에서 장준의 사회 하에 부흥총회를 개최하고 선언, 강령, 규약 수정안 통과와 임원선거가 있는 후 무사히 폐막하였다. 청년회가 결의한 강령은

- ①우리들은 사회운동의 선구자가 되기를 기함
- ②우리들은 대중의 합리적 사회생활의 획득을 기함
- ③우리들은 해방 운동상에 있는 실재적 이익을 위하여 노력함

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장준, 김극수, 장철, 홍순용, 김태수, 강진, 최()준으로 피선되었다.¹²⁰⁾ 그러나 이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영동사회운동자는 사상단체인 七月會 결성하였다. 이후 장준 등은 청년회를 탈퇴하고 친월회를 통해 영동지역 청년운동 내부에 사회

116) 『동아일보』 1923년 5월 9일. 당시 조선청년연합회 집행위원이었던 김철수가 영동에 도착하여 영동청년회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한 바 김철수는 “살 道理”로 육병세는 “계속적으로”라는 주제 강연을 하였다(『동아일보』 1923년 3월 14일).

117) 『동아일보』 1923년 5월 9일.

118) 이 무렵 청년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박찬승은 이처럼 각지 청년회가 유명무실해져 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도층의 성격을 들고 있다. 즉, 청년회를 이끈 주도층이 운동에 대한 전망이나 확고한 의지가 결핍된 채 분위기에 휩쓸린 청년 지식층과 청년회장 등 명예를 탐낸 지방 유지들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박찬승, 『일제하 실력양성운동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70쪽).

119) 『동아일보』 1925년 12월 15일.

120) 『동아일보』 1926년 5월 20일,

주의 사상을 수용하는데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획득해 나갔다. 이후 영동지역 사회운동은 영동청년회와 칠월회로 각각의 활동을 전개했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소작쟁의가 활발해지자 영동지역에서도 소작인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영동지역에서 소작인단체가 출현한 것은 1923년 1월이었다. 영동청년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자 했던 지주출신의 간부들은 전국적으로 고양되어 가는 소작인들의 쟁의에 자극을 받아, 순수 소작인들의 단체가 탄생하기 전에, 자신들의 통제가 용이한 소작인들의 단체를 만들려고 계획하여 조선소작인상조회 영동지부를 설립하려 하였다.¹²¹⁾

영동지역의 농민운동은 장준 등이 1923년 2월 영동소작인상조회를 창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¹²²⁾ 영동소작인상조회는 1920년 8월 27일 宋秉峻이 아들 宋鐘憲과 李晩承 외 20명을 발기인으로 해서 창립한 단체이다.¹²³⁾ 이들이 공존공영의 슬로건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상조회 내부에 공존공영이 관찰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¹²⁴⁾ 그러나 이

121) 강호출, 「植民地時代 忠北永同地域의 農民運動研究」, 『史叢』제39집, 1991, 82쪽. 영동지역의 농민조합 운동에 관한 것은 이 논문의 도움에 의한 것이다.

122) 『동아일보』 1923년 2월 3일.

123) 姜東鎮, 앞의 책, 238~239쪽. 이것은 앞으로 격화될 농민운동에 대처해서 소작쟁의를 미리 방지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당국과 지주층의 지원으로 만든 조직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소작인을 보호해서 지주, 소작인 서로의 이익증진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영동지역에서도 이러한 소작인상조회가 조작되기에 이르러, 창립이후 영동소작인 상조회는 소작관계 개선, 공존공영 분배 공평, 일치단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동아일보』 1923년 4월 18일).

124) 지난 31일에 창립된 영동소작인상조회에서 결의 한 제반사항은 본지에 소개한 바 있거니와 이에 대하여 지주와 조작인간의 타협을 시도하고자 지난 8일 영동 군청 내에서 5~6명의 지주가 회합하여 농회장 김홍규 씨의 사회 하에 좌와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①소작료는 재래의 상당한 도조에 의하되 무택조는 두로써 1석으로 할 일, ②지세 및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할 일, ③두량은 필히 두 개를 용할 사, ④제초는 전부 소작인이 취득할 사, ⑤재래의 두세는 철폐할 사, ⑥소작료 운반에

러한 조선소작인상조회의 영향으로 설립되는 영동소작인상조회는

“자래로 지주의 횡포에 대하여 소작인 사이에 여론이 비등 함은 이미 다 아는바 이다. 몇 사람의 발기로 경성에 본회를 둔 조선 소작인상조회 영동지회를 설립코자 200여명의 소작인이 청년회관에 집합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를 진행 하였던 바 장준은 지회가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송병준은 현시 귀족계급에 처하였고, 또 조선의 대지주로 지주와 상대 되는 소작인 상조회의 회장이라 함은 첫째로 회장을 신임치 못하겠으니 소작인은 자립의 정신을 가지고 영동소작인 상조 회로 함이 가하다”

고 하여 열렬히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박수 찬성하여 즉석에서 영동 소작인상조회로 창립총회를 마쳤다.¹²⁵⁾

영동소작인상조회는 창립 이후 그 취지를 全郡의 농민에게 알리고 자 各面을 순회 강연했으며, 1923년 4월 장날을 이용하여 지주들에 대한 비판연설을 한 후 수백 명 농부는 각각의 어깨에 ‘공존공영’, ‘분배 공평’, ‘일치단결’, ‘생산은 소작인의 피다’ 등의 표어를 써 붙이고 북을 울리며 시위항거 하였다.¹²⁶⁾

1923년 9월 장준의 지도로 “현재 소작인상조회는 소작인 이외에는 회원이 될 수 없는 즉 이로 만족할 수 없으니 무릇 모든 무산자는 다 회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서로 일치단결하여 우리의 착취계급인 유산 계급에게 대항해야 하겠은 즉, 먼저 이름부터 영동 노동동맹회로 바꾸자”는 김두수의 발언이 채택되어 영동노동동맹회로 명칭을 바꾸었

대하여는 12리 까지 무료로 할 것, ⑦천재지변에 인하여 3원 이상 비용이 될 시에는 지주가 이를 부담할 사, ⑧소작권에 대해서는 소작인이 과실이 없는 한 이동치 말 것, ⑨무상노동은 절대로 불용할 사, ⑩소작인은 원주민을 본위로 하고 소작면적은 균등을 기도할 사(『동아일보』 1923년 2월 26일).

125) 『동아일보』 1923년 8월 25일.

126) 『동아일보』 1923년 4월 18일.

다.¹²⁷⁾ 이때부터 회장제를 집행위원제로 바꾸는 등 조직 활동의 질이 더욱 향상되었다. 집행위원으로는 장준, 장철, 김극수 등이 임명되었다.¹²⁸⁾ 한편 장준은 조선농민총동맹의 충북지역 중앙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앙조직과의 연계도 꾀했다.¹²⁹⁾

영동노동동맹회는 그해 9월 국제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선전문 배포와 시위를 했으며, 강연회도 개최하였다. 강연회의 연사는 장철, 김두수, 강택진, 권귀현 등으로 연제는 각각 ‘자본주의의 비밀’, ‘국제 청년 데이와 조선’, ‘남의 힘을 먹는 자는 죄악’, ‘영장이나 축성이냐’ 등이었다. 영동노동동맹회의 임원들은 이와 같은 강연회를 통하여 농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영동노동동맹회는 1924년 3월 정기총회를 통해 “①소작권 이동에는 절대로 공동경작을 할 일, ②남징한 소작료에 대해서는 절대로 회수할 일, ③강징한 지세 및 공과에 대해서는 필히 반환케 할 일, ④악 지주 및 악 마름에 대해서는 성토연설회를 통해 일반 사회에 공포할 일” 등의 4개항을 결의하기도 했다.¹³⁰⁾ 이와 같이 영동노동동맹회는 노동야학 설립과 소작관계 개선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일반 소작인 45천 명 가량의 조직원을 포섭할 수 있었다.¹³¹⁾ 그러나 노동동맹회는 1925년경 유명무실해졌다. 이때부터 1929년 영동농조가 조직되기까지 영동지역은 농민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다.¹³²⁾

이와 같이 설립된 소작인조합에 대하여 총독부에서는 “1922년 이래 소작인의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10곳에 이른다”고 하며, 이 조합들은

127) 강호출, 앞의 글, 84쪽.

128) 『동아일보』 1923년 9월 3일.

129) 지수길, 앞의 책, 91쪽.

130) 『동아일보』 1924년 3월 18일.

131) 『동아일보』 1924년 3월 18일.

132) 「張竣 외 10人 判決文」, 刑控 第125號, 1928년 6월 20일. 당시 농민단체가 없음에 대하여 김두수는 “사회운동은 어떠한가? 영동의 사회운동이라 하면 청년운동을 제외하고서는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다. 노동운동으로 말하자면 한참 동안은 격렬하였지만 반동세력의 압박으로 당분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있다(『시대일보』 1926년 1월 8일).

“과격한 언론을 토하고 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바 없지만 당국의 협조에 의하여 양자가 서로 협의 양보하여 점차 해결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소작인조합이 요구사항이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소작인조합 결성을 주도한 세력을 ①경성에 있는 조선인소작상조합의 지부로서 설치되었다. ②상조합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과 관련하여 설치되었다. ③不逞輩들의 선동에 의하여 설립되었다.¹³³⁾ 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소작인조합의 요구 사항들은

- ①지세 그 밖의 공과는 전부 지주가 부담할 것
- ②소작료는 절반으로 할 것
- ③소작료 수납 계획 방법의 개정
- ④소작 연한의 연장
- ⑤소작인의 소작료 운반거리의 단축
- ⑥소작지 수리비의 소작인 부담 경감
- ⑦마름 그 외의 소작지 관리인의 두세 및 무상 노동의 폐지

등으로 파악하였다.¹³⁴⁾ 충북지역의 소작인조합 중 지주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면리 단위의 소작인 조합이 연대를 하면서 이들이 연합 단위 소작인 조합으로 확장하기도 했는데,¹³⁵⁾ 피산 소작인조합과 영동 소작인상조합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영동소작인 상조합

133) 『朝鮮の農業發達史』(政策篇), 532쪽.

134) 지역 소작조합이 교과서적인 항목으로 요구조건을 내걸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조선노동공제회 제3회 대회에서 농민문제 선언이 있었고, 그에 따라 「소작인은 단결하라」는 장문의 선언을 그 해 7월 31일 『동아일보』에 소개하여 농민문제를 시국문제로 제기한 바의 영향 때문이다(조동걸, 앞의 책, 118쪽). 1922년 「소작인은 단결하라」라는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조선에서 처음으로 소작문제를 사회문제로 부각시켰던 것이다. 이어 9월 조선노동공제회 진주지회에서는 소작노동자 대회를 개최하여 定租閉止, 소작료 5할, 지세 및 부가세의 지주부담 등 8개항을 결의하고 시가행진을 하였는데 이후 소작조합의 결의사항에 큰 영향을 주었다(김석근, 앞의 글, 35쪽).

135) 강훈덕, 앞의 책, 85쪽.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자각을 종용하던 때의 이끌려 가는 농민운동이 아닌 조합원 주체의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소작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소작료의 평균 4할 이하로 인하, 지세 및 공과금의 지주부담, 소작권의 보장, 횡포한 마름의 배제 등을 결의하여 소작인의 권리주장과 보호를 위한 보다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초기의 소작쟁의는 전국의 경제상황과 상당한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초기의 대규모 소작쟁의는 그것이 단순하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소작인조합, 단체와의 상관성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작쟁의가 농민분화양상과 거의 대응하고, 또 그 원인이 주로 소작권과 소작료 문제라는 점은 소작쟁의가 갖는 즉자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토지소유의 실효형태인 소작료에 대한 철저한 인식, 토지소유권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¹³⁶⁾

이후 차츰 농민운동은 단순한 소작조건의 개선이라는 경제투쟁에서 전체 농민의 권익을 실현을 위해 일제의 농민 탄압에 대한 정치 투쟁적 성격으로 변해갔다.¹³⁷⁾ 이렇게 소작인 조합이나 소작인상조회는 농민들의 이익을 위한 소작운동을 전개하는 일을 했던 것이다. 소작인조합이 소작인을 위한 소작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원인으로 이 지역 청년지식인들의 활동에 영향을 받았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소작조합운동은 지방의 청년회조직과 소수의 지식계급(민족개량주의자들의 사상적 영향 하에 있었던 언론기관, 종교단체)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따라서 당시 대부분의 소작쟁의는 농민운동 조직의 조직적, 정치적 지도가 미약한 까닭에 어설플 것이 되거나 개량화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심지어는 완전한 패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¹³⁸⁾ 따라서 소작인 단

136) 김석근, 앞의 글, 32쪽.

137) 이우재, 『한국농민운동사』, 한울, 1986, 36쪽.

138) 지수걸, 앞의 책, 47쪽. 영동지역의 영동소작인상조회 같은 경우도 노동동맹회로 전환하며 소작인 중심에서 일반 무산자까지를 포괄하는 단체가 되었지만, 자본주의의 사회적 모순을 유산자무산자운동으로 파악하

체를 이끌던 청년회가 활동력을 잃을 때, 소작인조합도 함께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해 갔다.

3) 농민조합의 농민운동

192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농민운동은 농민조합운동으로 나타난다. 1920년대 초반에 전개되었던 소작쟁의는 해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농민운동의 조직화로 나타났고, 조선노동총동맹을 비롯하여 이 시기에 많은 농민단체가 나타난다.¹³⁹⁾ 이러한 농민조합운동은 농민운동을 자연발생적 경제투쟁에서 목적의식적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운동주체를 소작농뿐만 아니라 자작농으로 까지 확대하며, 이를 위해 특히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 선전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였다. 이렇게 소작인 조합이 농조로 개편되었다는 것은 소작인 중심의 운동이 자작농을 포함한 범농민적인 대중운동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농민조합이 충북지방에서도 1927년 이후에 청년운동과 노동, 농민운동도 역시 사회운동의 방향전환에 의거하여 민족주의 청년단체들과 사회주의 청년단체들은 전선의 정리를 행함으로써 “부분에서 전체로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지방에서 전국으로 개인에서 대동단결”로 발전하여 나갔다. 이렇게 결성된 농민조합으로 충북지역에서는 1927년 제천농민조합, 청주 미원농민조합과 1930년의 영동농민조합이 있었다. 미원농민조합, 제천농민조합, 영동농민조합의 설립과 활동내용을 검토해 본다.

여 부농과 지주, 빈농과 프롤레타리아의 역사적 차이점을 간과하고 다만 착취-피착취계급으로 파악해 이를 농촌에서 계급투쟁으로 인식한 문제가 있다(강호출, 앞의 글, 85쪽).

139) 조동걸, 앞의 책, 95쪽.

(1) 제천 농민조합

충북지역의 농민조합 설립은 제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제천에서는 1920년 7월 10일에 제천유지들에 의해 제천청년회가 1922년 12월 창립되었다. 제천청년회는 智德體 三育의 發達과 實業 獎勵, 慣習改良을 목적으로 개량적인 사회운동을 시작으로 농촌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23년 이후 다른 청년회처럼 제천청년회도 그 활동력을 상실하고 별다른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다시 제천청년회는 1925년 청년총동맹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1926년 11월 임시총회를 통해서 “회무를 일층 쇄신하여 종래 수면상태에서 벗어나 대활동을 개시하자”라고 하며 제천 청년회는 임원의 일체 교체를 통한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였다.

토론 강연회를 개최하고, 노동야학을 개시하며, 비리가 심한 면장 박이양을 성토했기도 하는 등 사업을 벌어나갔다.¹⁴⁰⁾ 1926년 수해로 제천군에서는 사망자가 29명이나 나고 생존자도 아사 직전에 이르며 다수의 수재민이 발생하자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곡물을 모집하고, 水災地를 訪問, 慰勞하였다. 또한 1926년 5월과 6월에는 제천 공보 학생들의 동맹휴학도 주도하였다.¹⁴¹⁾

수해문제 등으로 몰락한 소작농들에 의해 다시 소작문제가 시급한 지역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러자 특히 관내지주가 많았던 제천지역에서는 당시 증가하는 소작쟁의를 비롯한 농민들의 불만을 조기 차단하고 무마하기 위하여 지역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농민조합의 결성을

140) 『동아일보』 1927년 8월 30일, 면장인 박이양은 제천청년회 발기인 중의 한명이다. 그의 면비에 대한 비리가 심해지자 이를 성토했는 일을 청년회가 주도하였던 것이다.

141) 『동아일보』 1926년 6월 17, 18, 19, 20일. 제천 공보의 5, 6학년 학생 120여 명이 동맹휴학하였다. 그리고 15일부터는 전교생이 휴학하였다. 16일에는 학생들의 태도가 누그러져 대부분 등교하고 17일 복학하였다.

서들렀다. 그리하여 제천청년회의 조명귀, 김정호, 이범우 등은 제천에 거주하는 유지들과 연합하여 제천거주 농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제천농민조합 발기인을 모집하여 1927년 5월 7일 제천 청년회관에서 발기총회와 창립총회를 동시에 개최하며 제천 농민조합을 창립하였다.

충북 제천군 읍내리 유지들의 발기로 제천농민조합을 조직하고자 하여 지난 2일 발기회를 개최하였고, 당일은 우천임을 관계로 개최하지 못하고 지난 7일 오후 1시에 제천청년회관에서 임시의장 김정호의 사회 하에 발기총회를 열게 되어, 의장의 발기 취지 설명이 있는 후 조합의 창립을 가결하고 폐회한 후, 계속해서 다시 임시의장 김정호 임시 서기 조명귀, 사찰 이범우 4인을 선거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규약안 및 결의안 등을 수조 통과할 때, 그 결의안 제2안이 온전치 못하다는 이유로 임석경관의 취조경고가 있자 마침 회원 중에서 결의안 등으로 가결된 의견은 취소하기로 가결하였고, 중앙집행위원 59인을 선거한 후 창립총회를 무사히 폐회하였다.¹⁴²⁾

제천농민조합은 창립대회 이후 즉석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임시의장 김정호의 사회 하에 열어 상무집행위원을 선거한 후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이때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이들은 중앙집행 위원으로 이종억, 부중앙집행 위원으로는 한지동 외 18인을 선출했고, 가결 사항으로 ①소작제도에 관한 건, ②4적 퇴치에 관한 건, ③농사개량에 관한 건 등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제천농민조합의 관심은 그들의 결의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제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최고의 현안인 소작문제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일제의 농정에 대한 대책 수립이었다. 그리하여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그 대책으로 ①소작료 감정위원회에 관한 건, ②실행위원 선거권, ③지부설치 건 등을 결의하였다.¹⁴³⁾ 제천

142) 『동아일보』 1927년 5월 12일, 처음 창립일은 5월 2일로 계획했으나 우천관계로 7일로 발기회 및 창립총회일을 연기하였다.

143) 『동아일보』 1927년 8월 14일.

농민조합에서는 8월에 제천청년회관에서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①유지방침, ②사업방침, ③조합원 단결방침의 방안, ④오는 음력 27일 총회개최의 건 등으로 제천농민조합의 성격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었다.¹⁴⁴⁾

이렇게 제천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유지들과 조직한 제천농민조합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농민을 위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제천농민조합은 이전의 소작인조합과 하등의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민보다는 지역유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변농민단체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28년 이후 제천농민조합의 활동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¹⁴⁵⁾

(2) 미원 농민조합

청주지역에서도 1927년에 들어와 청주청년회가 “사회사업은 고사하고 會體 모습 유지방침이 묘연하다”고 개탄하며 김옥, 김한, 이종호 등의 발기로 청주청년회의 부흥을 위하여 시내 망성루에서 장래의 유지방침을 정하고 신강령을 발표하였다.¹⁴⁶⁾

- ①오등은 신사회를 건설하자
- ②오등은 견실한 사회의 이익을 돈독키 위하여 투쟁하자
- ③오등은 우리들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자

이렇게 새로운 사회주의 사조를 수용하는 행동강령을 발표한 후 새롭게 조직된 청주청년회는 성적부진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 있다고 자각한 동시에 총사퇴하였다.¹⁴⁷⁾ 이를 계기로 새롭게 조직된 청주청년회는 새로운 활동방향을 정하고 당시의 각 부문운동과 연대를 모색하

144) 『동아일보』 1927년 8월 22일.

145) 지수걸, 앞의 책, 476쪽.

146) 『중외일보』 1927년 1월 9일.

147) 『중외일보』 1927년 8월 27일.

며 신간회 창립을 주도해 나갔다.¹⁴⁸⁾ 한편으로는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년단체 활동 속에 야학 활동과 산동청년회와의 연계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활동하였다.

청주청년회와는 별도로 청주 산동지역에는 1927년 12월 6일, 申伯雨¹⁴⁹⁾, 李種元¹⁵⁰⁾ 등의 주도로 山東農友會는 19명의 발기인 및 참여자를 중심으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①회원모집 ②본회의 목적보급 ③소작전담 및 소작료 건 ④회비징수의 건 등을 논의하였다.¹⁵¹⁾

산동농우회는 결성에 신백우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는데, 신백우는 1925년 6월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나온 이후 고향인 墨井¹⁵²⁾으로 돌아왔다.¹⁵³⁾ 일경의 감시를 받고 있던 신백우는 자신이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모든 것을 지도하였고 일선의 실무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그리하여 신백우는 고향인 낭성면을 비롯하여 이웃 미원면 가덕리 등 소위 산동의 유지들을 은밀히 만나 농민조합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¹⁵⁴⁾

산동농우회는 첫 사업으로 교육부 경영 일환으로 미원노동학회를

148) 『중외일보』 1928년 4월 28일.

149) 신백우는 1908년 조직된 靑年學友會의 서기로 활약하였고, 1909년 조직된 大同靑年黨 당원으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1920년 노동공제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교육부위원에 피임되었다가, 공제회 잡지 주간, 서로군정서 참모 주임되었다. 1922년에는 火曜會 조직 활동하면서, 1923년 無産者同盟 靑年會, 勞農總同盟 등 조직하였다.

150) 이종원은 산동청년회 집행위원장(『중외일보』 1929년 3월 15일)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151) 『중외일보』 1927년 5월 20일.

152) 목정을 중심으로 한 청주시에 이르는 일대의 고장에는 고령신씨가 천여 호 이상을 헤아릴 만큼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타성의 큰 손님이 신씨 문중을 내방할 때는 어디로 가나 종가문중이 있다하여 가덕, 낭성 兩面에 이르는 70리 일대에서는 관을 쓰고 정장을 하며 다녔다고 한다(耕夫 申伯雨先生記念事業會, 앞의 책, 23쪽). 그래서 고령신씨를 일명 산동 신씨라고도 한다.

153) 耕夫 申伯雨先生記念事業會, 앞의 책, 155쪽. 그 후 신백우는 집행유예가 풀리는 1935년까지 고향에 머물렀다.

154) 산동농우회 결성의 결실을 보자 이듬해인 1928년에는 산동공익조합도 발족하여 회원이 무려 수백 명을 헤아렸다(耕夫 申伯雨先生記念事業會, 앞의 책, 156쪽).

설립 운영하였다.¹⁵⁵⁾ 노동야학을 유지하고자 소인극을 행하며 당지 유지들의 동정을 구하였고,¹⁵⁶⁾ 1928년에는 산동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 유지들의 후원을 받으며 미원청년회의 후진양성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여자상조회와 미원소년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¹⁵⁷⁾

2월 7일 산동농민회는 미원시장에서 제1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 신백우를 중심으로 농민회의 확장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방법으로 회원모집의 건을 집중 토의하며 취지서, 규칙서 및 신입서를 각 지역에 배부하여 주장에게 의뢰하여 모집하기로 하며 필요하면 위원이 신입회원모집을 위해 출장을 갈 수도 있다고 하였다.¹⁵⁸⁾ 그 후 제1회 정총 때 산동농민회의 회원 120명이 집합하여 지주 및 마름에 대한 분분한 토의를 한 후 ①생활개선 건, ②무리한 소작료를 착취하는 지주방제의 건, ③숨音 철폐 건, ④지세를 지주에게 부담시키는 건, 등을 결의한 후 실시 운동은 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하였다.¹⁵⁹⁾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농민조합의 설립에 노력하였다. 청주 흥덕회 청주군 문의면 덕우리 농민들이 소작인조합을 결성하였고, 청주 북이면 석화에는 석화청년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했다.¹⁶⁰⁾

산동농우회는 전위조직으로 청년운동을 전개한 산동청년회를 두었다. 산동청년회는 1927년 5월 회장 申健雨를 중심으로 4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청년운동단체였다.¹⁶¹⁾ 산동청년회는 공공사업에 주력하거나 공동우물 및 공공사업을 벌어나갔다.¹⁶²⁾ 산동청년회는 1928년에는 5월에는 1주년 기념식을 가지면서 임원도 새롭게 피선하였는데 의원장은 이종원, 의원으로는 김호식, 박한복, 오세기, 金珥으로 하였다.¹⁶³⁾

155) 『중외일보』 1929년 5월 9일.

156) 『중외일보』 1927년 8월 16일.

157) 『중외일보』 1928년 1월 14일.

158) 『중외일보』 1928년 2월 7일.

159) 『동아일보』 1928년 3월 27일.

160) 『동아일보』 1929년 6월 18일.

161) 『동아일보』 1929년 1월 2일.

162) 『중외일보』 1927년 8월 8일.

산동청년회는 5월 16일 미원시장에 있는 이환세의 집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그들은 위원장에는 김세기 서무부장은 김홍식, 동부위원은 오창화, 재무부장은 이세환, 동부위원은 신형식 교육부장은 박한복, 동부위원은 양석기, 고문은 신백우, 이종원¹⁶⁴⁾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청주 미원에서 수년 전부터 산동청년회 교육부 운영으로 미원노동학회를 설립하고 지방 무산아동을 모아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지난 가을에 당국으로부터 금지를 당하여 금년 봄에 미원리에서는 다시 야학이 유지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당국은 허가를 말아야 한다고 하며 야학의 문을 닫게 하더니 금년 봄에 이르러서도 허가를 신청한 바 종무소식이었다.¹⁶⁵⁾

미원지역에 언론기관의 증설에도 노력하여 산동기우회도 조직되었다. 기우회에는 『동아일보』 청주지국을 비롯하여 『중외일보』 미원지국, 『동아일보』 미원지국, 『조선일보』 미원지국으로 구성되었다.¹⁶⁶⁾

그러나 산동농우회는 농민조합을 표방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농민을 위한 농민조합 활동은 보이지 않았다. 그 후 산동농우회는 미원 농민조합조로 개편된 것으로 보이나 그 확실한 내용은 알 수 없다.¹⁶⁷⁾

(3) 영동 농민조합

영동지역에서는 영동 노동동맹회가 유명무실해지고, 1928년 장준을 비롯한 영동지역 청년 운동가들은 일제히 투옥되면서부터 1929년 영동 농민조합이 조직되기까지 영동지역의 농민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이 새롭게 영동사회에 등장한 1929년 1월 이후 그동안 침체되었던 영동지역의 사회운동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이들은 출옥 후 사회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목적으로 사회운동자 간

163) 『중외일보』 1928년 5월 8일.

164) 신형식은 이후 적우연맹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던 사람이었다.

165) 『중외일보』 1928년 8월 12일.

166) 『중외일보』 1929년 5월 3일

167) 『동아일보』 1929년 5월 20일; 지수걸, 앞의 책, 475쪽.

친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영동지역청년들은 1929년 2월 기존의 면단위 청년회 조직 체계를 변형시켜 군단일화의 청년동맹을 조직했다.¹⁶⁸⁾ 영동청년회관에서 단일 청년동맹 창립대회를 열고 집행위원장에 김태수를 선임한 후

- ①사회적 훈련과 자체교양에 관한 件
- ②농촌문명퇴치에 관한 일반사업
- ③사업적 단결 및 계발에 관한 사업
- ④체육보건에 관한 사업
- ⑤농촌부인 교양에 관한 사업
- ⑥소년, 소녀의 교양 및 보호에 관한 사업
- ⑦불건적 악습 및 일체 미신타파
- ⑧공회당, 도서관 설치
- ⑨調査研究에 관한 사업 ¹⁶⁹⁾

등의 사항을 토의하였다. 이 활동은 야학개설, 토론회의 개최, 한재 구제 연구회 개최 등으로 이는 청년대중의 의식적 교양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었다.

1930년 4월 30일, 제3회 정기대회를 통해 영동청년동맹은 그 모습을 새롭게 했다. 기존의 기본 사업방향 외에 노동, 농민, 신간회, 여성, 소년 등의 일반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노동야학 부흥의 건과 더불어 전군의 노동야학 연합체 설치, 지부 설치, 학생 사건 비판의 건, 충남북도연맹 설치의 건, 전국 대표자회의 출석 및 의안작성,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획득의 건 등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영동농민조합은 영동청년회와 비슷한 시기인 1930년 2월 26일 영동노동동맹회가 개조되는 형태로 창립되었다. 영동농민조합 창립 직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30년 4월 1일 제2회 정기대

168) 강호출, 앞의 글, 88쪽.

169) 『동아일보』 1929년 2월 19일.

회를 통해 “농민조합 자체의 발전과 일반 운동의 방침을 수립하는 동시에 사업설계와 운동을 확대하려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별다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다가 제 2회 정기대회에서 강령으로

- ①본 조합은 일상투쟁을 통하여 무산농민대중의 생활향상을 기함
- ②본 조합은 일상투쟁을 통해서 무산농민대중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획득을 기함
- ③본 조합은 무산농민대중의 의식적 교양의 철지를 도모하는 동시에 고루한 봉건적 유풍의 소멸을 기함

을 정하고 조선농민총동맹에 가입할 것을 결의했다.¹⁷⁰⁾

한편 영동농민조합의 집행위원장이었던 장준과 농민조합의 간부들은 1930년 중반부터 소비조합을 조직하려 모색하고, 그해 10월 영동청년회관에서 영동소비조합 창립대회를 가졌다.¹⁷¹⁾ 표면으로는 ‘중간이익의 배제’, ‘소비자의 이익 옹호’ 등을 표방하여 그들은 운동자금의 획득과 운동 확대, 강화를 목표로 한 영동소비조합을 조직하고, 농민,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합원 2천 4백 여 명을 모이게 했다. 회원들에게 자금을 출자케 하고, 그 돈으로 이사, 서기, 점원 등이라는 명목 하에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자, 1931년 2월 소장파에 속한 김태수 이하 4명은 원로파 장준 등의 소극적 태동에 불만을 가지고, 소장파의 활동으로써 영동사회운동을 주도하겠다는 목적 하에 비밀결사, 영동 적우동맹을 조직하였다.¹⁷²⁾

그러나 영동농민조합은 창립 이후 별다른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영동농민조합이 영동지역 사회운동의 중심이 서게 되는 것은 1931년

170) 『조선일보』 1930년 4월 5일.

171) 강호출은 이러한 소비조합의 창립은 청년동맹과 농민조합이 갖는 농민대중과의 낮은 결합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농민위주의 활동을 하기위해 조직하게 되었다고 보았다(강호출, 앞의 글, 90쪽).

172) 池中世 編譯, 앞의 책, 81쪽.

전국적으로 신간회, 청년동맹의 해소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부터였다. 신간회 해소론은 1929년 민중대회사건으로 다수의 운동자들이 검거된 후 그 공백을 틈타 1930년 4월 신간회 내에서도 자치론이 논의되자, 1930년 5월부터 제시되었다. 그러나 신간회 내에서 해소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 12월 부산지회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부터였다.

전국적으로 신간회 해소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1931년 2월 영동에서도 청년동맹 주최의 사회운동자 간담회를 열어 신간회해소문제를 토의했다. 토의 결과 신간회와 청년동맹을 전투적으로 해소할 것, 이후 농민조합으로 하여금 해소된 단체의 구성분자들을 흡수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농민조합에 편입되지 못하는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할 것에 대해 결의했다.¹⁷³⁾

영동농민조합은 합법적인 농민조합이었다. 그러나 영동농민조합의 의식 있는 간부들은 합법적인 활동을 강화하는 외에 비합법적인 활동을 통해 영동농민조합을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전환시키려 했다. 영동농민조합 집행위원장 최관홍은 영동농민조합 황간 지부원인 김순화, 박기철, 방영주, 김원수, 박찬영 외 수십 명을 불러 모아 놓고 침체되어 있는 영동농민조합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비합법적인 활동과 교양부를 강화할 것을 역설한 후 그 자리에서 교양부원을 선출했다. 김두수는 공산당준비사건 관계자 심치령으로부터 「조선문제 12월 테제」, 「조선좌익 9월 테제」, 「조선 반제 협동전선의 제문제」라고 제목한 김민우의 글을 회람하고, 이것을 복사하여 「조선 혁명적 노동자 계급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공산주의의 실행을 선동하는 격문으로 영동군 내 농민조합원에 배부하여 적화공작의 지침으로 하였다.

그들은 영동농민조합, 소비조합, 노동조합을 표면단체로 간판을 걸고 그 이면에 있어서는 적우동맹이 이러한 단체를 이끌고자 하여 혁명분자의 양성, 농민, 노동자 계급의 의식수준을 향상에 주력하였다. 그 방법은 어디까지나 경찰의 눈이 덜하고 있는 농민야학, 부인야학

173) 『조선일보』 1931년 3월 24일.

등을 두어 혹은 촌락을 다니면서 주의 선전 등으로 지내었던 것이다.¹⁷⁴⁾ 이와 같이 영동농민조합은 농민조합 내에서 좌익블럭을 결성하여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전환을 시도했다.¹⁷⁵⁾

그러나 영동농민조합은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전환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도 전에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된다. 영동 농민조합 내에서 좌익블럭을 결성하기도 위해 교양부 사업을 강화하고, 청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을 주목하고 있던 일제 경찰은 농민조합의 간부들을 검거하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32년 2월 20일 심천면의 금호농민야학에서 학예회를 개최하여 공산주의의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영동지역 사회운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계획하고 1932년 2월 22일부터 검거에 나섰다. 이때 경찰이 조사한 것은 금호농민야학이 아니라 영동지역 사회단체의 사무실, 신문사 지국 등이었으며 이때 30여명이 검거되었다. 이로 인해 영동 농민조합은 무너지고 말았다.¹⁷⁶⁾

이렇게 영동농민조합이 파괴된 후, 1935년 충북 전 지역의 농민운동 및 사상운동에 대한 일제의 「보고서」에는 “제천지역은 일본인과의 관계도 지극히 원만함으로써 제천읍내 같은 경우는 관민의 융화가 진정으로 나타나 평화로운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교통기관의 발달에 동반하여 타지방과의 접촉이 점차 증가하여 자극을 받음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①주의적 분자들의 동정, ②불온사상의 전파 방지에

174) 池中世 編譯, 앞의 책, 82쪽.

175)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종전과 다른 특징은 첫째, 노농소비에트의 건설과 토지혁명 등 혁명적 슬로건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계급, 계층별 조직 원칙을 강조하면서 농업노동자부, 그리고 청년부, 부녀부 등 새로운 독자부서를 결성하고, 또 빈농계급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서둘렀다. 셋째, 일상적인 경제투쟁을 정치투쟁과 결합시키고자 하였다. 넷째, 합법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던 종전의 운동의 한계를 탈피하여 비합법투쟁의 전국적인 전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개량적인 농민운동을 개조하거나 아니면 아예 분쇄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자신들의 운동을 당시 공산주의운동의 당재건운동과 결합시키고자 했다는 점 등이 종전의 합법농조운동과 구별되었다(지수걸, 앞의 책, 89쪽).

176) 강호출, 앞의 글, 97~98쪽.

항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농민조합의 활동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괴산지역도 “괴산지역은 … 교통기관의 발달과 함께 공산주의적 분자의 왕래가 자못 긴밀하게 이루어 파급되어, 양반 유생의 자제, 농촌의 청소년 간에는 이러한 주의적 분자들 집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공명하고 이것을 포착하는 것이 점차 더해져서 낙관하고 있는 모양이다… 농민의 대부분은 소작농으로서 종래 지주와의 관계는 극히 원만하였으나 작년 농지령 실시 이후 일부 지주 소작농 사이에 동령을 곡해하여 소작권의 이동, 소작료의 증가, 불납 등에 기인하는 개인적인 분규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이었지만, 이것을 거의 군소작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 아직 집단적 쟁의와 같은 악성 쟁의는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다.

보은지역에서도 “소작권 이동문제에 기인하는 개인적 분쟁 사건이 수권이 있었지만, 군면 당국의 조정에 의하여 원만 해결되었고, 아직까지 집단적 쟁의의 악성쟁의는 발생하지 않았다.”¹⁷⁷⁾ 이렇게 충북지역에는 농민조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농민조합은 1920년대 중반부터는 단순히 소작농뿐만 아니라 자작농, 자소작농까지 포괄하는 단체로 전국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1920년대 후반 내지 1930년대에 설립된 것들은 조직의 성격상 소작인 조합보다는 농민조합에 가까운 것이었다.¹⁷⁸⁾

농민조합은 소작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농민의 자생을 구하고자 한 1920년대 초반의 소작운동과는 달리 무장투쟁도 불사하는 반체투쟁으로서의 주도적 역할까지 담당하려는 단체였다. 이처럼 소작인조합 및 농민단체운동은 지방적인 수준과 전국적인 수준에서 전개되었다. 지방의 경우 처음에는 소작인회, 조합인조합 등 소작인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소작인 운동에서 점차 그 구성원의 폭을 넓혀가는 농민조합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었다.¹⁷⁹⁾

177) 「昭和十年一月乃至十月社會運動情勢」, 『思想彙報』5, 1935, 57쪽.

178) 김석근, 앞의 글, 60쪽.

192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농민운동은 점차 그 활동영역을 확대하면서 이른바 '12월 테제' 이후에는 농민조합도 군단위 농민조합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어 이에 기초한 농민운동은 밑으로부터, 비합법적인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바로 공산당계건운동과 결합되어 갔다.¹⁸⁰⁾

이런 면에서 보면, 충북지역 같은 경우는 영동지역을 제외하면 중앙운동권(조선공산당이나 전국규모의 사회운동조직)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면서 활동한 활동가도 거의 없었고, 충북지역의 경우 면지부나 동리반을 거느린 군단위 사회운동조직이 거의 없었으며, 농민조직으로 전국적 통일망을 가진 조선농민총동맹에 가입한 곳도 없었다.¹⁸¹⁾

다만 영동지역의 농민조합만 유일하게 농촌과 연계하여 1930년대 들어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보았으나 제천이나 미원농민조합은 그렇지 못했다. 제천과 미원의 농민조합의 활동은 자료의 부족으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설립주체가 1920년대 초기 청년회를 조직하던 지역유지와 지역청년회가 중심을 이루는 것을 보면 20년대 초반의 소작인조합과 별 차이가 없는 농민조합이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은 농민의 각성, 일상적 이익의 옹호, 대중적 투쟁의 고양 등에 있었지만 곧이어 이른바 방향전환론이라는 국면에서 농민운동은 침체의 부진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년대 하반기에는 상당수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빠졌으며, 지역 농민운동은 다시 원래의 온정주의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¹⁸²⁾

179) 김석근, 앞의 글, 41쪽.

180) 김도형, 「1930년대 경북지역의 농민운동」,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여강, 1993, 463~465쪽.

181) 영동농민조합은 면에 지부를 두고 밑에 반을 두어 군 단위 농민조합-면지부-반의 조직체계 형식을 갖추기는 했으나, 농민조합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기 위한 기반이었던 반조직은 제대로 꾸려지지 못했다(강호출, 앞의 글, 90쪽).

182)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 비평사, 1992, 412쪽.

4. 농민운동의 성격

충북지역에서 1920년대 초반에 설립된 소작인조합과 20년대 후반에 와서 결성된 농민조합 활동내용을 살펴보았다. 충북지역에서는 한곳에서도 20년대 초기부터 설립되었던 소작인 조합이 30년대 비합법적인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발전하며 농민운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충북지역 농민운동에서는 농민들이 농민을 위한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식민지 농업 수탈정책과 반봉건적 지주제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소작 관계 투쟁, 농업 정책 반대 투쟁, 협동조합운동 등의 농민중심의 투쟁-필자주)이 그만큼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충북지역의 농민운동을 평가할 때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농민운동이 전개되는 과정과 비교해 보면 농민운동의 역사적 의의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운동의 오류와 한계가 더 많은 곳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농민은 있지만 농민운동은 없는’ 그런 곳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농민운동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우선 농민단체를 조직하고 유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 이른바 혁신청년운동가¹⁸³⁾들이 갖는 청년 선봉주의의 한계¹⁸⁴⁾를 들 수 있다. 혁신 청년운동가들은 대개 사회주의를 수용한 이

183) 혁신청년이라는 말은 1920년대 중반 청년회 혁신운동 과정에서만 쓰였던 용어다. 혁신청년은 1925~1926년경 전국 각지에서 청년회 혁신운동이 왕성하게 전개될 때 이를 이끌던 주체들에 대한 ‘방법적 개념’이다(지수길, 『일제시기 충남 부여, 논산군의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 『한국근대사회와 문화』Ⅲ, 서울대학교출판부, 340~344쪽).

184) 김석근, 앞의 글, 60쪽. 충청남도과 충청북도 역시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농촌사회에서 계급구조의 변화, 즉 농민문화현상 내지 지주 소작관계를 바탕으로 한 농촌의 갈등체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아울러 토지를 매개로 한 관계가 일차적인 갈등으로 드러나는 소작쟁의의 지역적인 특성과 완전히 배치되고 있다. 실제로 영동지역의 김태수, 김두수 등도 서울에 올라가 공부하고 공산주의를 수용한 혁신청년으로 『동아일보』 기자 등을 겸임하며 농민운동에도 참여하지만,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유복했던 이들이었다(전

들이지만 여전히 봉건적이었던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서 지사적이고 관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시적인 영웅심이나 정의감, 의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타락하거나 반동화되기 쉬웠다. 그러나 한편 엄청난 제국주의적 일제 권력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대결하기보다는 자연이나 인맥, 인간적 신뢰 등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혁신청년들은 그들의 운동차원에서 농민단체에 농민을 끌어들이는 데 급급하였으며 농민들의 대중적 정서나 일상적 요구에는 결과적으로 무관심했다. 즉 그들은 농민조합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유지들과 농민조합만 결성했을 뿐이다.¹⁸⁵⁾

또한 농민운동을 이끌던 혁신청년가들의 토대가 너무 빈약하였다. 충북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 사회활동을 보이던 영동지역의 농민조합이 일제에 의하여 해체되고, 1930년대 초반의 각종 비밀결사 사건에 의해 핵심적인 활동가들이 검거됨으로써, 충북지역 혁신청년운동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유명무실한 단체들로 독자적인 요구를 담은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시종일관 유지집단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정도였다.¹⁸⁶⁾ 이런 조직력으로는 결코 농민운동을 장기적으로

상숙, 『일제시기 한국사회주의 지식인 연구』, 지식산업사, 2004, 101~102쪽).

185) 이렇듯 혁신적인 청년들이 가진 성향은 사회 경제적 배경을 보면 그들 대부분이 뽐뿌부르주아 출신의 청년지식인이었다(전상숙, 앞의 책, 103쪽).

186) 지수걸, 앞의 글, 212쪽.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충북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론에 도취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사상적 연구 집단 활동의 일부분으로 공산주의에 대해 토론하고 깊이 생각했다. 토론이나 연구에 만족하고 있는 한 이들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활범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론을 실천에 옮겨야만 했을 때, 나아가 시위를 기도하고, 광범위한 조직 활동을 전개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타도를 꾀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즉각 체포되었다. 2~6년간 투옥된 후 이들은 거의 대부분은 공산당의 활동대열에 복귀하지 않았다. 물론 끊임없는 체포와 붕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쟁에 돌입하는 소규모의 헌신적인 핵심집단이나 예외적인 존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예외였으며 공산주의 운동에서도 지속적인지도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스칼라피노, 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1, 돌베개, 1986, 133쪽).

지속시켜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없는 것이었다.

둘째, 사상적 바탕이 마련되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충북지역 농민운동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청년회나 사회운동을 이끌던 혁신적인 청년들이 주도되었다. 당시 혁신청년단의 성향은 대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그 사상을 지역사회운동에 적용하려 하였다. 1927년 경찰에 파악된 청년단체는 사상적 성격을 띤 단체로 민족주의와 무정부주의 단체는 없고, 사회주의적 단체로는 11곳, 주의적 색채가 있는 단체로는 27곳을 들고 있다.¹⁸⁷⁾ 그 단체 중 대표적인 사회주의적 단체는 <표-16> 정도에 불과했다.

<표-16> 충북 사회주의적 단체 (1927년 현재)

단체명	소재지	설립일	설립자	회원수	운영단체
조선소년군 45호대	청주	1927.2.21	허호, 최명식	6	조선소년대 본부
진천중견 청년회	진천	1927.4.4	최영수 외 9명	30	
덕산청년회	제천군 덕산	1927.4.26	김충호, 이선근	30	
산동청년회	청주 미원	1927.5.12	이종원 외 5명	49	
괴산소년회	괴산	1927.5.21	곽규석, 안철수	48	괴산청년동맹
충주명륜 청년회	충주		김()수 외 3명		충주청년회
청천청년회	괴산 청천	1926.7.6	정상렬 외 7명	25	괴산청년동맹
제천소년회	제천		진우 외 2명		제천청년회
기우단	청주	1926.2.2	신승호 외 5명		신간회 청주지회

자료: 「最近朝鮮國內思想運動ノ情勢」, 別紙 第1號, 1927년.

187) 朝鮮總督府警務局, 『朝鮮の治安狀況』, 1927, 48~49쪽.

그 중에서도 산동청년회나 제천청년회에만 농민운동에 동참할 뿐, 다른 청년단체(특히 피산청년동맹)는 농민조합의 결성을 주도하거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¹⁸⁸⁾ 그나마 혁신적 청년그룹에서 활동하던 이들 중 영동지역에서 활동하던 장준¹⁸⁹⁾의 경우에 불과했다. 같은 공산주의의 실현을 꿈꾸는 청주 산동지역 산동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신형식은 청주지역에 와서 비밀결사조직인 '적우동맹'을 주도하다 체포되었다.¹⁹⁰⁾ 또한, 진천지역의 박화서¹⁹¹⁾와 함께 활동하던 정병준도 공산주

188) 피산청년동맹은 신간회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활동보다 신간회활동에 주력하였다.

189) 장준은 젊어서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계몽운동에 참가하다가 공산주의적 사상을 품게 되고 1924년 전조선청년당 개최 이래 조선의 사회운동은 민족운동으로부터 계급운동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김두수도 이 영향을 받아 조선노동 총동맹 및 청년총동맹이 조직되자 장준, 김두수 등은 상경하여 이에 참가하고 귀향 후 공산사회를 희망하여 1925년 10월 영동청년회, 황간청년회, 용화청년회, 양간청년회, 영동노동청년회 등 영동군내 5개 단체를 중심으로 영동청년연맹을 조직하였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장준 외 10인 판결문」, 형공 제269호, 1933년). 그렇게 유입된 공산주의의 감화를 받은 영동지역에서는 1925년 1월 13일 서울청년계 장준은 영동지역에서 사상단체로 '七月會'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그 야채이카를 조직하는데 이들의 활동은 다른 지역까지 파급되지 않았다(「在京主義者等ノ最近ニ於活動狀況關ケル件」, 경중경고비 제2312호, 1925년).

190) 『중외일보』 1931년 12월 13일. 신형식은 민족주의자였던 신건우에 감화되어 일찍부터 민족의식을 품어오다가 1930년 같은 동리에 사는 박재린 등과 회합하고 협의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그러다가 1931년에 청주로 이동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면서, 공산주의사상을 이루려면 독립이 우선이고, 평등하게 되려면 조국의 독립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6월 이후 와우산 근처에서 회합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공산제도를 실현할 목적으로 적우동맹을 조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91) 「朴華緒 외 1人 判決文」, 刑控 第123號, 1932년. 박화서는 진천 청년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1개월을 언도받는데 박화서는 공산주의 사회실현을 위해 육영사업으로 성성학교를 설립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하며 '상식함양'이라는 목적 하에 「소작인」, 「불합리한 현대사회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등의 제목을 선정하여 "항상 우리들 무산자들이 마땅히 일치단결하여 유산계급에게 항쟁하여 사유재산제도를 철폐하자"라고 하며 실행에 관한 선

의 사상을 품고 성성학교에서 함께 활동했지만 농민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셋째, 오히려 충북지역은 보수적 경향이 강한 지역이었다. 1930년 당시 사상운동에 관한 상황 「보고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충북지역은 양반유생의 淵叢地로서 알려져 있듯이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많아 민족적사상이 왕성한 것을 본도의 제일이라고 칭한다”¹⁹²⁾라고 할 정도로 보수적이며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곳이었다. 이런 배경 하에 사회주의 사상을 습득한 혁신청년들은 김단야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의 대부분은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운동을 전위로 활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¹⁹³⁾라고 할 정도로 민족주의는 모든 면에서 공산주의보다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명한 조치였다.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적 봉기의 주도자가 된다면 이는 민족운동의 지도자들을 공산주의 쪽으로 끌어들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운동주체인 혁신청년들의 기본적인 보수적인 성격은 소작인들의 농업문제 제기를 외곡해서 받아들이고 대처하게 만들었다.

넷째, 일제의 농촌통제정책의 성공적 운영을 들 수 있다. 사회운동의 성패 여부는 기본적으로 운동 주체와 운동대상의 힘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 침략기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도 일제의 통제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일제는 모든 청년단체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군단위 활동가들은 물론 대부분의 지부, 반 단위의 활동가들마저 투방식으로 검거한 후 지역에 따

동을 하였다.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사회하의 불합리와 공산주의자들의 인가로 무산자들이 일치단결하여 유산계급과 투쟁하여 사유재산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사상을 고취하였다는 것으로 써 혁명 선동 혐의로 체포되었다.

192) 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査局思想部, 「昭和十年乃至十月社會運動情勢」, 『思想彙報』4, 1935, 56쪽.

193) 스칼라피노, 이정식, 앞의 책, 130쪽.

라 거의 모든 활동가들을 몇달을 두고 취조와 예심이라는 명목으로 가두어 놓았다. 이러한 탄압 아래 각종 청년운동단체의 역량은 결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충북 지역의 농민운동은 지역단위의 운동이었을 뿐 전국적인 전망 아래 지도된 운동이 아니었다. 지역 차원의 운동을 전국적 운동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의 운동조직은 고립적으로 투쟁을 벌이다가 일제의 탄압 앞에 각개 격파될 수 밖에 없었다. 전위분자들은 투옥되거나 망명해야 했고 과거와 같은 활동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설사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검거를 모면하고 국내에 남아있었다 해도 당시 일본 경찰들은 어느 부분이든지 좌익과 연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의 과거 활동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되었고, 따라서 검거를 면한 사람들은 만주나 상해로 망명해야 했다. 장래 공산주의운동의 잠재적 지도력은 이리하여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¹⁹⁴⁾ 이런 일이 이미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은 제2장 2절의 일제의 농촌통제 정책에서 살펴본 바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충북지역의 농민들은 가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농민운동 조직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억누르는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글에서는 1920년대 초 조직된 소작인조합이 1930년대 농민조합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밝혀보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충북지역의 조합을 통한 농민운동은 1920년대 초의 소작인조합이 1930년대 농민조합, 더 나아가 혁명적 농민조합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던 점만을 확인

194) 스칼라피노, 이정식, 앞의 책, 133쪽.

했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발견한 충북지역 농민운동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려 한다.

첫째, 충북지역의 농민운동은 소작인조합의 결성으로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이 소작인조합의 결성의 주체는 당시 청년회를 이끌던 청년들이었다. 이들이 청년회를 조직하고, 펼친 사업은 대개 실력양성론에 계몽주의적 활동이었는데, 이 방법을 그대로 소작인조합운동에 적용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주도된 소작인조합에서 내건 요구 조건은 하나같이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실제로 소작인 조합이 결성되었다 하더라도 농민의 농민을 위한 조직은 아니었다. 때문에 소작인조합은 농민을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농민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청년회가 그 활동력을 잃거나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면 곧 소작인 조합도 그와 운명을 함께해야 했다.

둘째, 1925년 이후 사회주의가 수용되면서 청년회의 운영에도 변화가 생기고 추진하는 사회운동에도 변화가 나타나지만, 농민문제에 있어서는 혁신청년들의 청년 선봉주의적 방법으로 농민문제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혁신청년의 활동은 농민운동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농민조합도 농민조합을 통한 식민지 수탈과 억압에 대한 투쟁으로 자본주의적 착취와 봉건적 억압에 맞서야 했는데 그런 활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제천농민조합이나 산동농민조합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천의 농민조합은 지주로 비롯되는 유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변단체로서의 역할까지 하였다. 산동 농민조합도 농민조합 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이나 청년회의 역할만 담당하였다. 그나마 영동 농민조합만이 사상성을 바탕으로 개량적이고 무용지물한 한계를 벗어 버리고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했을 뿐이다.

셋째, 충북지역은 사상성을 바탕으로 한 농민운동이 살아남기 힘든 지역적 특징이 있다. 충북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족의식이 강하고 보수적이며 완고한 지역이었다. 이런 완고하고 보수적인 성격은 일제의 침략 당시 즉자적인 대결을 요하는 의병의 봉기 등에는 긍정적인 작용

을 했겠지만, 1920년대 이후 새롭게 수용되는 신사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사상을 이해했다. 그런 그들은 대개 충북지역의 유지층이고 혁신청년이 되었다. 그들이 계급적 이해를 달리 하는 농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절실한 자기문제화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다.

넷째, 농민들의 무지 무능력도 농민운동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었다. 1930년 당시 충북지역민의 80.4%가 무학이었고, 한글을 쓸 줄 아는 정도가 13.9% 밖에 되지 않는 교육 정도를 받은 농민들은 무식으로 인하여 농촌사회에 불어드는 1920년대 이후의 일제의 농업정책의 적용에도 그 본질을 모르고 우선 고분고분 잘 따르는 선량하고 순박한 농민이 되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단순히 소작권을 지키고자 지주나 마름에게 과도한 소작료나 심지어 경제외적 강제까지 무리하게 제공하며 몰락해 가는데 정작 자기 목소리로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있다.

다섯째, 그런데 이러한 농민들을 간파하고 당시 농민운동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지식인 계급인 청년은 농민들에게 사회주의적인 사상성을 부여하기는 하였지만, 농민들의 생활과는 무관한 유리된 관념적 자기 독선의 농민운동만을 일삼았을 뿐이다.¹⁹⁵⁾

때문에 1920년대 후반의 농민운동에서도 농민조합이 노선상의 표방과는 달리 농민대중을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해결 주체로 결집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농민조합이 결성되기는 하였지만 대개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는 청년 혹은 사회운동가들이 “농민을 위한 사회단체 즉 외부로부터 先位的運動을 함에 불과한” 농민조직에 머물렀고, 그 활동 또한 직접적인 대지주 투쟁보다는 야학이나 집회 등의 농민문제에 머무는 한계를 보였다. 그런 면에서 “당시 공산주의운동은 기본적으로 이론에 도취된 젊은이들에 의해 전개된 소부르주아 운동이었으며, 학생, 노동자, 농민에게 영향을 미치

195) 김준엽,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184쪽.

기 위해 산발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상단체들의 운동이었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충북지역의 농민운동은 이러한 면이 더욱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충북지역 농민운동을 약화 내지 소멸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일제의 탄압을 들 수 있다.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의 추진과 관련해 농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지주들도 여기에 편승하여 소작권 이동 공세를 강화하면서 농민운동을 파괴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와 지주들의 탄압은 운동의 기반이 약했던 소작인조합의 농민운동과 농민조합의 농민운동을 무력화시켰다.

[논문접수:2013. 5. 11, 심사시작:2013. 5. 16., 심사완료:2013. 5. 29.]

주제어 : 농민운동, 소작조합, 농민조합, 치안유지법, 산미증식
계획, 청년회, 공산주의

<ABSTRACT>

**Changes in rural communities and
peasant movements in Chungbuk province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Focusing on the early 1920s and 30s-**

Jang, Seung-soon

Rural communities in Korea were affected by 'Land Investigation Business' in 1910s and 'The Plan to Increase Rice Production' in 1920s conducted by Japan. Japan established and expand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gun and myeon, and police organizations as well as various associations(chohap) like agricultural associations, financial associations, and so on. They functioned as bureaucratic bodies and physical suppression organizations of the Government General. These are established to oppress the farmers who resisted these policies and to effectively rule the rural areas. On the other hand, it enacted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ct and the others.

Under these conditions, peasants in the Chungbuk area established tenant farming unions and developed peasant movements such as a farm tenancy dispute to improve the condition of tenant farming in the early 1920s. Tenant farming unions were founded in seven guns such as Boeun, Okcheon, Jincheon, and the others started from Jecheon-gun. Then under the effect of Chosun Tenant Farming Cooperation, tenant farming unions were founded in Cheongju, Chungju, and Youngdong. Since the Young Adult

Association which has an enlightenment nature based on the ability improvement theory dominated the regional society and led the social movements, tenant farming unions could not be out of the influence of this association. Therefore, with diminishing of the movement by the Young Adult Association, tenant farming unions lost their reason for being.

The change of direction of social movement represented all over the nation in the late 1920s affected peasant movements. 'A spontaneous economic struggle' changed to 'a purposeful political struggle.' The range of main agents of the movement expanded to 'independence farmers' and the tenant farming unions changed and developed to farmers association.

In Chungbuk area in 1927, to keep pace with these trends Jecheon Farmers Association was founded that is irrelevant to the tenant farmers union organized previously. Young Adult Association and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the center of regional socialists, led the establishment of Miwon Farmers Association in 1927 and Youngdong Farmers Association in 1929.

However, the activity of Miwon Farmers Association, reorganized organization of Sandong Rural Organization, was weak enough not to be recognized as the affiliated organization of All Farmers Alliance. Youngdong Farmers Association could not survive and changed to revolutionary farmers association until 1930s. Therefore no farmers' organizations led by farmers existed in the early 1930s.

In Chungbuk area, 'there are farmers but not farmers movements' in the perspective of farmers movement. Then, what is the reason? That is because in Chungbuk the farmers did not turn to the class subjects who resist to the domin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landed class. The majority of farmers were illiterate and had

low social consciousness. Their abilities fell short of solving this problem. The ones who wanted to arrange with this task require carrying the abilities and insights to comprehend the colonial domination system and the agricultural exploitation organization systematically. The innovative Young Adult Association was the only one which held enough strength to solve the problem. But the form of this force was weak in Chungbuk and even if this existed, it may be not be able to play the role in the influence of conservative social and cultural atmosphere in Chungbuk area.

Keyword : peasant movement, tenant farming union, farmers association,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ct, Plan to Increase Rice Production, Young Adult Association, communism.